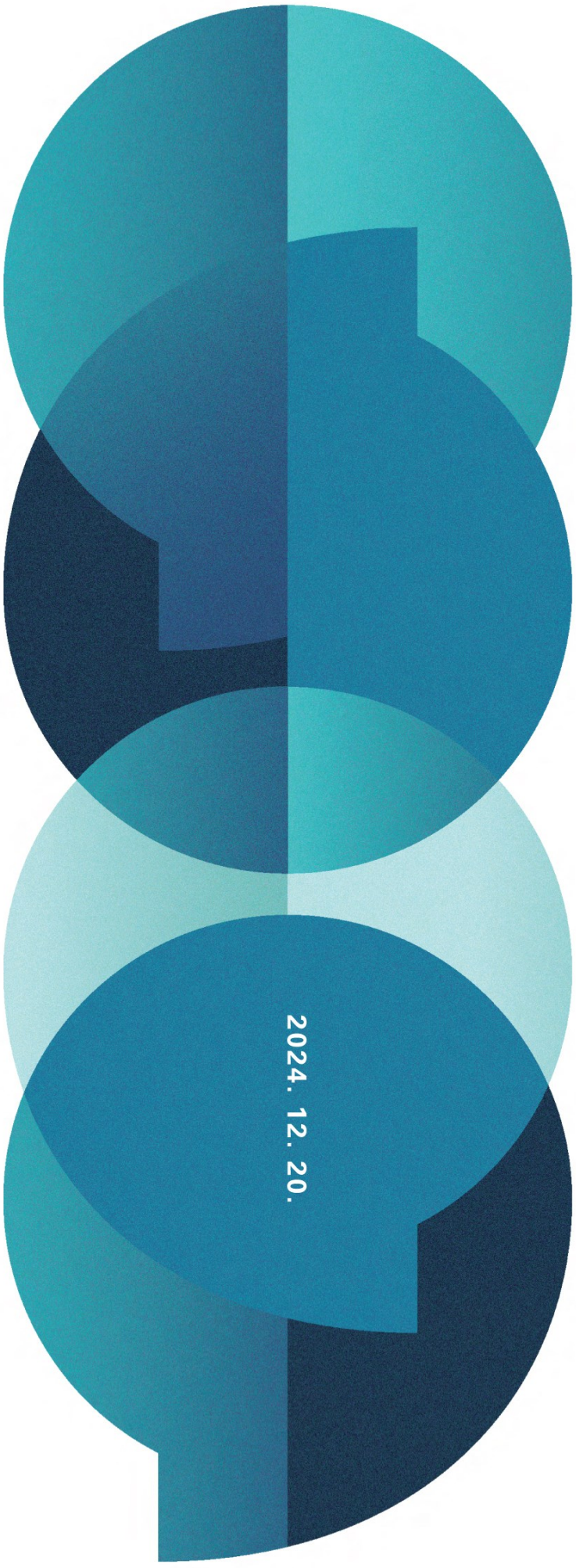
2025 ISSUES & TRENDS



BKL 2025 전망 보고서

총론: 2025년 기업 법무, 이것을 주목하라
정치와 경제
기업법무/M&A
인사노무
공정거래
온라인플랫폼 및 AI 규제 동향
에너지/환경
제약바이오
건설부동산
금융
금융소송
IP
조세

bkl 법무법인(유한)태평양

2025년 기업 법무, 이것을 주목하라

'복합 리스크' 속 법무적 판단이 전략적 의사결정의 열쇠로

'A house of cards'. 매우 불안정해서 작은 실수로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을 뜻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어쩌면 2025년 한국 기업들이 놓이게 될 '시계 제로(0)'의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새해는 전방위적으로 들이닥칠 복합적인 리스크들이 맞부딪히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앞을 내다보기 힘든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는 법무 분야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옳고 그름의 차원을 넘어서,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필수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조직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법무적인 판단은 단순하게 리스크 대응이나 관리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전략적 의사 결정에서 키(key)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달리 말하면, 법무 부서로서는 법무 전문성은 물론 정치, 경제,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5년의 벽두부터 밀려올 첫 번째 대형 리스크는 트럼프 2기의 개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함에 따라 무역과 산업, 외교, 투자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안보 분담금 문제 등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자국 산업을 위한 보호장벽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요구를 받게 되고, 무역적자 감축 압박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반도체와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에 따라 한국 금융정책이 제약을 받고,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적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 파면 여부가 2025년 상반기 중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인데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단정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특히, 탄핵심판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 검찰 수사의 향방입니다. 현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국방부 등 모든 관련 기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에는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검찰 등의 주요 수사 부서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경제사건 수사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던 검찰로서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대규모의 새로운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하반기부터는 검찰이 신뢰 회복 차원에서 각종 경제범죄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사전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개혁 입법 움직임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경영에서 주시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3대 법적 이슈

이러한 가운데, 업종과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를 비켜가지는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법적 이슈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이들 법적 이슈는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한 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을 퍼펙트 스톰이 되어 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소수주주 보호, 대주주 견제, 밸류업 등과 관련한 규제를 비롯하여 분할합병 등 기업 구조개편을 위한 중요 의사결정에서 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사업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공시 의무를 포함하여 다양한 법적 위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확충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정치적·사회적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에 대한 인사노무 분야의 도전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년 연장과 일·가정 양립 지원, 노동 약자 보호, 임금체불 권리 구제, 산업안전의 강화를 지향하는 입법 추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경기 침체와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각종 분쟁은 더욱 늘어날 소지가 큽니다.

더욱이, 어수선한 정국에서 작업 현장의 긴장이 이완되고 안전 관리가 소홀히 되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 미치는 여파는 지난 3년 간의 재해 사건과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2024. 12. 19. 대법원의 통상임금 재직조건 판결을 비롯하여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될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사건들(원청의 사용자성,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결과에 대해서도 주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정거래 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하도급 등 갑을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지원, 입찰 담합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법안의 경우 민주당의 발의안이 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지만, 어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관련 기업들의 경영 여건에 크나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아가, AI 관련 입법은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전에 없는 정교하고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딥페이크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강화되는 세부 규제의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각적인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예상되는 에너지, 환경, 제약바이오, 건설 부동산 및 금융 분야, 그리고 일상적으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지적재산권 분야와 조세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에 대해서도 별도의 챕터에서 다루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KL 2025 전망보고서」가 귀 사의 효과적인 상황 분석과 현안의 타개를 위한 기본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5년에도 최고의 실력을 추구하면서 '고객 중심' 철학을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망보고서 편집위원]

범현 변호사(위원장), 권석천 고문, 우병렬·정규상 외국변호사, 김성희·강수림·안유진 변호사

이 전망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구체적인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항목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Part 1 | 정치와 경제 1

I. 국내 정국 전망 1
II. 2025 경제전망 5
III.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의 영향 9
IV. 검찰 수사 동향과 전망 16
V. 국회 입법 및 국정감사 전망 25

Part 2 | 기업법무 / M&A 30

I. 2025년 M&A 전망 31
II. M&A 관련 규제 도입, 감독 강화 및 분쟁 전망 36

Part 3 | 인사노무 42

I. 정부: 정책 및 규제 전망 43
II. 노사단체: 방향성 및 활동 전망 45
III. 법원: 대법원 판결 선고 및 분쟁 추세 전망 46

Part 4 | 공정거래 52

I. 공정거래 규제 개관 52
II. 공정거래 질서 확립 53
III.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확립 55
IV. 기업집단 규제 및 카르텔 조사 55

Part 5 | 온라인플랫폼 및 AI 규제 동향 57

I.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57
II. AI 규제 동향 61

Part 6 | 에너지/환경 68

I.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시장 동향 69
II.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동향 74
III.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77

Part 7 | 제약바이오 80

I.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제약·바이오산업 전망 80
II. 2025년 국내 규제 전망 84
III. 2025년 국내 산업지원 정책 동향 88

Part 8 | 건설부동산 92

I.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해 증가되는 분양계약의 취소 및 해제 관련 소송 92
II. 고금리 상황 지속 여파로 인한 공사비 분쟁의 다각화 96
III. 프로젝트 리츠 등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97
IV. 노인복지 주택 관련 제도개선 101

Part 9 | 금융 108

I. 2024년 가상자산 시장 동향 108
II. 2025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108

Part 10 | 금융소송 112

I.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현황과 전망 112
II. 분쟁의 관점에서 살펴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14

Part 11 | IP 118

I. 스타트업 기술 보호·구제 관련 정책 동향 118
II. 스타트업, 중소기업 기술 보호·구제 강화 관련 입법 동향 및 전망 121

Part 12 | 조세 124

I. 필라 1, 2 관련 현황 및 전망 124
II. 국제조세 판례의 동향 및 전망 126
III. 주요 국제조세 이슈 및 전망 128

Part 1 | 정치와 경제

I. 국내 정국 전망

※ 이 내용은 「정치컨설팅 민」(대표: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과 협업의 결과로서, 박성민 대표의 분석과 시각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박 대표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두 개의 시간표에 달린 한국 정치

1) 첫 번째 시간표: 대통령 탄핵심판

'12. 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여파 속에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12.3 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탄핵소추인인 국회와 윤 대통령 간의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과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민주당은 국회추천 몫 재판관 3명의 임명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탄핵심판이 '내란 혐의 형사판결'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관련해선 해당 재판관들이 국회 추천 몫이어서 임명이 형식적인 요식 절차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중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2025년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두 번째 시간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소송 항소심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1심 형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10년간 박탈됩니다. 반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형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1심에서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한차례 이뤄진 상태여서 항소심 결과는 상반기 중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슷한 시기에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마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정당별 역학관계

이 두 개의 시간표와 관련해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각 정당의 역학관계입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여당은 물론 야당의 내부 역학이 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한동훈 대표 사퇴 후 구심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전 '친윤vs반윤'의 구도가 전당대회를 거치며 '친윤vs친한'으로 바뀌었다가 비상계엄 후에는 '친한vs반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는 친윤계와 친한계가 모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중진 모임이 당의 의사 결정을 주도하고 있지만 탄핵 반대파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쇄신 요구에 직면할 경우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진모임은 '관리형 비대위' 체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혁신형 비대위' 요구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선 당명 개정이나 신당 창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민주당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구심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과입니다. 이 대표 측은 '중도'를 포섭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교·안보 정책도 우려 불식 차원에서 유연하게 수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과도하게 압박할 경우 '국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3) 개혁신당

2030 세대와 중도보수에 기반을 둔 개혁신당에 있어 '조기 대선'은 당 기반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내년 3월 말이면 40세가 되어 그 이후에는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윤 대통령과 친윤에 의해 쫓겨난 대표'라는 서사가 이 의원의 정치적 자산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을 향해 러브콜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응천 전 의원 등 민주당 탈당파도 박용진 전 의원 등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세 불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각 63일, 91일간 진행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기각돼 즉각 직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인용돼 파면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까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해보겠습니다.

1)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분위기 쇄신에 착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복귀와 함께 국무총리를 교체하고 개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혼란 상태가 지속되거나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다시 불붙으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과 행정권-입법권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2)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은 2025년 1월 발표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예상후보 별 가상대결이 1차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의 경우 경선 없이 이 대표를 후보로 추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거법 사건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때에는 지지율 추이에 따라 후보 교체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출마한다면 ①완주 ②후보 단일화 ③개방형 통합 경선 등 세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OOO냐, 아니냐'의 구도를 넘어 민심에 대한 기본자세입니다. 민주당은 단단한 지지층만 바라보지 않고 상당수 유권자의 비토 정서를 극복하는 포용성과 민생 및 외교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영남 소수당'이란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국정 운영 및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가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



권석천
고문
T 02.3404.7599
E sukchun.kwon@bkl.co.kr



김형욱
고문
T 02.3404.7350
E hyeongwoog.kim@bk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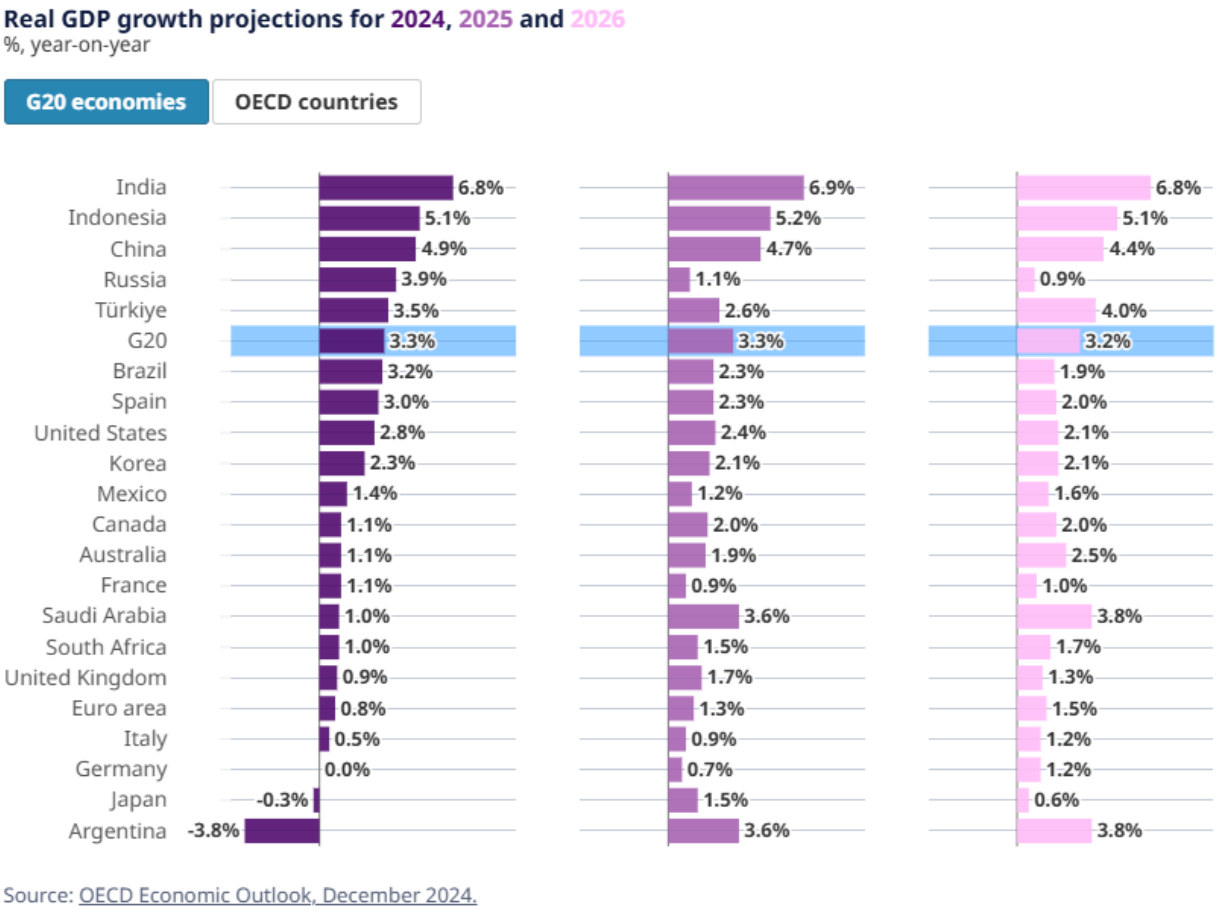


이동빈
전문위원
T 02.3404.0562
E dongbeen.lee@bkl.co.kr

II. 2025 경제전망

1.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4 년 수준이 2025 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

IMF와 OECD는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4년과 같은 3.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3.0%로 좀 더 비관적인 입장입니다. IMF와 OECD는 미국(IMF: 2.8→2.2%, OECD: 2.8→2.4%), 중국(4.8→4.5%, 4.9→4.7%) 경제가 모두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감소와 부동산시장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부진이 예상됩니다. Euro Area(0.8→1.2%, 0.8→1.3%)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미국이나 영국(1.1→1.5%, 0.9→1.7%)에 비해서는 부진한 수준입니다.



Sourc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목차 바로가기

2. 국내경제는 민간소비 개선에도 건설투자 부진과 수출증가 둔화 전망

2025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2→2.0%, IMF는 2.5→2.2%, OECD는 2.3→2.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내수 부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등 외적 요인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어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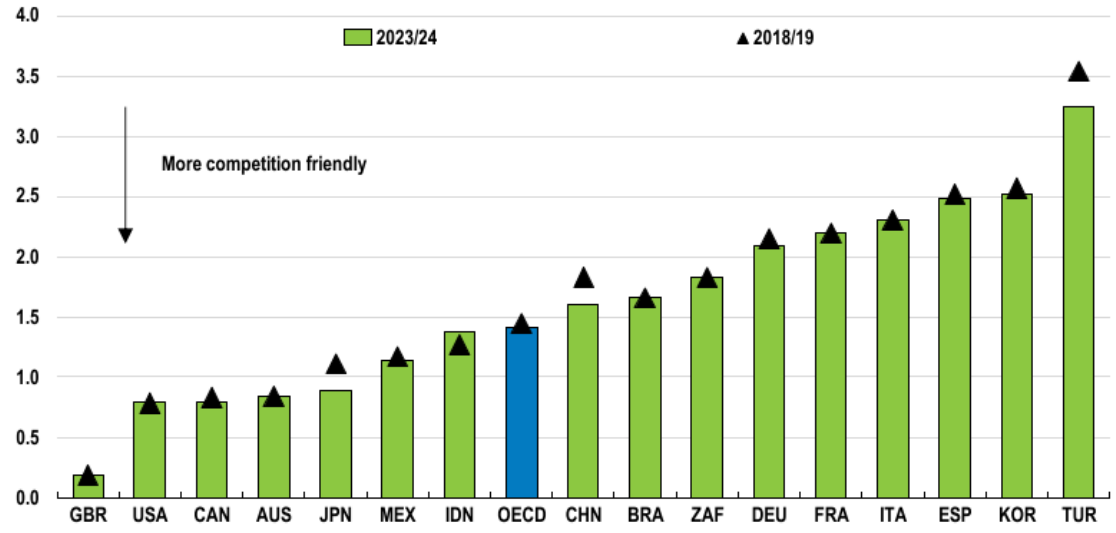
KDI에 따르면, 2025년에 민간소비는 금리인하와 수출 개선에 따라 2024년(1.3%)보다 높은 1.8%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금리인하와 반도체경기 호조로 2024년(1.6%)보다 높은 2.1%의 증가율을 보이며, 건설투자는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로 2024년(-1.8%)에 이어 -0.7%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건설업계의 재무건전성 악화 영향으로 건설투자 부진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수출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로 2024년(7.0%)보다 낮은 2.1% 증가에 그치고, 경상수지는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수요 압력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2024년(2.3%)보다 낮은 1.6%로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취업자수는 2024년(18만명)보다 낮은 14만명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률은 2024년(2.7%) 보다 다소 높은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OECD는 우리 나라의 서비스산업 규제가 비교대상국가 중 튀르키예 다음으로 엄격하다며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Figure 13. Services sectors regulations remain overly stringent in some countries

Barriers to competition in services sectors



Source: OECD PMR database and OECD-WBG PMR database for 2023/2024 and 2018/2019.

3. 미·중 경제가 동반 둔화... 지정학적 긴장과 보호무역주의 우려

2025년에는 미국 통상정책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세계교역의 위축, 부동산경기 침체 및 미·중 갈등으로 인한 중국 경기 급락 등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IMF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와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을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로 지적합니다. OECD는 지속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갈등이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수입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우려합니다. 아울러, 노동 시장이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급격히 낮아질 수 있으며, '부드러운 디스인플레이션' 경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 대미 수출 수혜 업종 부각 및 국제자금 흐름의 미국 유입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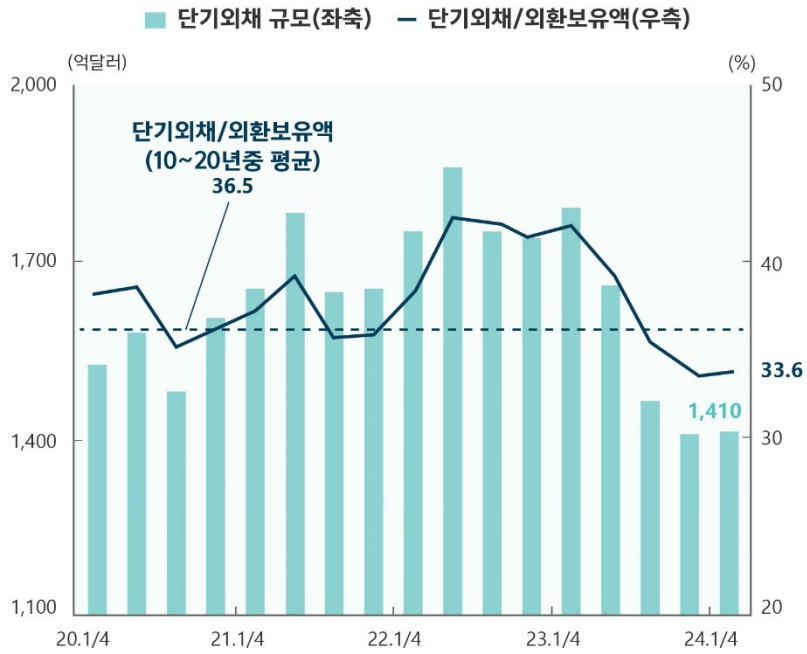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내 첨단산업 투자 및 인프라 증설이 활발해지면 반도체, 기계·장비, 화석연료 인프라, 조선 등의 분야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AI로 인한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로 원자력발전, 전력 인프라 분야도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산을 대체하는 효과로 한국은 자동차, 바이오 분야에서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KCIF(국제금융센터)는 당분간 '트럼프 2.0'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친성장 정책에 힘입어 미국 주식 및 미국 국채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규제완화 기대로 가상자산, 부동산, 사모투자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에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 필요

국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 경제팀이 긴밀하게 정책대응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필요시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하여 안정을 유지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인 대외지급능력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4,153.9억달러(2024. 11월말)로 세계 9위의 외환보유 국가이고 단기외채 규모는 1,410억달러(2024년 1분기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외지급능력의 척도로는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중요한데 이 지표가 2024년 1분기말 기준 33.6%이고, 중장기 평균 36.5%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자료: 한국은행).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동요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고 경제가 특정한 정치적 이벤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여러 차례 증명되어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급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정부와 시장을 신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허경욱
고문
T 02.3404.7504
E kyungwook.hur@bkl.co.kr



신제윤
고문
T 02.3404.7520
E jeyoon.shin@bkl.co.kr



우병렬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T 02.3404.6990
E byongyol.woo@bkl.co.kr

III.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의 영향

1. 공화당의 삼권 장악(Republican trifecta)



(출처:Illustration: Bloomberg Daybreak/Getty Images)

2024년 11월 5일(미국 시간)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쉬운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에만 그치지 않고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도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트럼프 1기 집권 시절과 비교해, 트럼프의 공화당 내부 장악력도 공고해졌습니다.

나아가, 트럼프가 연방대법원을 비롯한 연방법원 판사를 임명할 것을 감안할 때, 공화당이 미국의 삼권(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실질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화당은 주지사 및 의회 선거에서도 선전하여 민주당(23개 주)보다 더 많은 주(27개 주)의 행정부를 차지하고, 여러 주 의회에서 다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와 공화당은 연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뿐만 아니라 주 행정부와 입법부에서도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2기 집권 기간 동안 자신의 정책과 구상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충성도 높은 인사들을 내각과 비서실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는 당선 직후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를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를 국방장관,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를 에너지장관,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를 통상장관, 리 젤딘(Lee Zeldin)을 환경보호청장으로 신속히 지명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의 주요 정책을 충실히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1기 집권 때보다 더 안정적이고 유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책적 구상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국제관계와 한반도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은 다자주의 약화, 국제문제 개입 축소, 동맹관계의 긴장 조성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중 갈등 속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는 도전 과제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양자주의 선호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체제나 다자 협상보다는 양자 협상을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다자 협상보다는 양자 협상에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쉽다는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현재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정상화나 WTO 개혁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접근법은 다자체제를 약화시키고, 역설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 국제문제 개입 및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미국 우선주의), 미국이 국제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국제기구와 동맹 관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기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EU 국가들이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토(NATO)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기조는 동맹관계에 긴장을 조성하고,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서 유럽 국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미국의 지원을 상당히 축소하거나 없앨 가능성이 큽니다.

3) 중국·러시아 관계도 변화할 듯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 역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대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만을 방어하기 위하여 개입할 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모호한 입장은 대만해협의 지정학적 구조를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당선에 대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복 관세 부과, 내수시장 활성화는 물론, 미국이 아닌 제3의 시장에의 수출 확대,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미국과 멀어지는 국가(특히 Global South)와의 우호관계 증진 등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 간의 경쟁은 일정부분 유지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바이든 행정부과 달리 긴장 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대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집권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서구의 동맹에 균열이 생기길 희망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한반도 정책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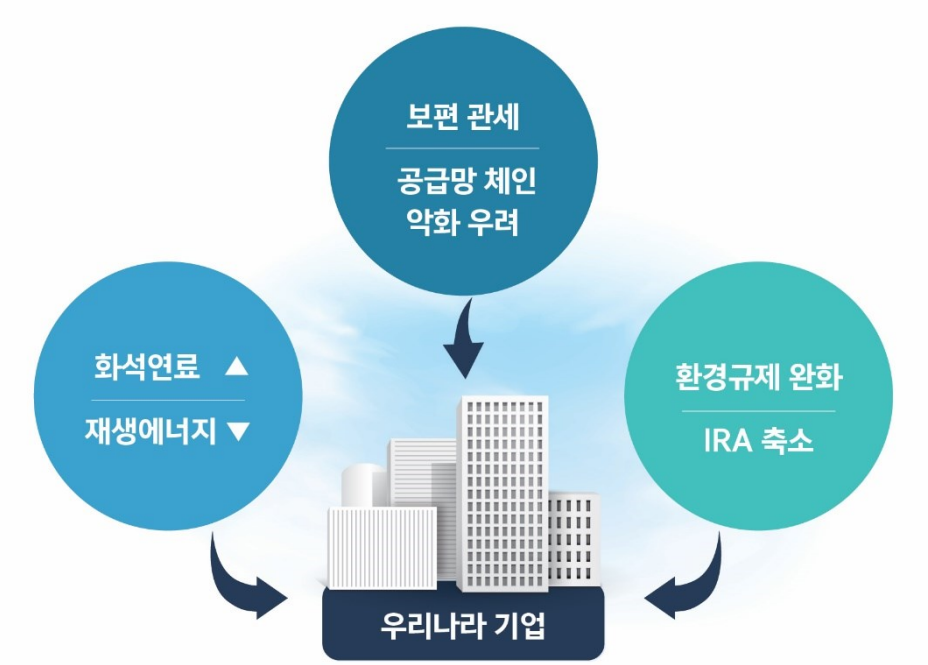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북한에 대해 압박 정책을 펼치면서도 북한 지도자와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 협상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으나 1기 행정부에서의 정상회담 실패 경험과 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협상이 재개되고 정상회담까지 성사될 것인지는 불투명합니다.

트럼프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2기에도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분담금 증액을 검토하는 한편 무기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대신, 보편 관세 미부과 등 경제적 혜택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동참을 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트럼프 2기 경제·통상정책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규제 완화, 세금 인하, 관세 부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과 밀접히 연관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보편관세와 무역전쟁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보편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한 멕시코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통상장관으로 지명한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은 트럼프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관세를 협상 수단(bargaining chip)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즉, 미국과의 통상 및 경제 협상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낮추거나 예외를 인정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반할 가능성이 크고, 다른 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보편관세 공약을 일종의 '허풍(bluster)'으로 보며 실제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보편관세가 도입될 경우, 사실상 마비 상태인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해결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의 주요 통상 상대국들은 이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이미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와 같이 수출 시장으로서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해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처럼 주요 국가 간 관세 부과와 보복이 이어질 경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화석연료 산업 지원 강화와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축소

트럼프는 'Drill, Baby, Drill'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석유 시추 확대와 관련 규제 철폐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에너지 안보와 공급 확대를 목표로 석유, 석탄, 가스 등 전통적 에너지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 감면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의 인하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루고 있던 천연가스 수출 허가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미국의 전통 화석연료(석유, 가스) 기업에게는 일종의 양날의 검(mixed blessing)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언처럼 전기요금이 대폭 인하된다면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개발이나 수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모든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영역이나 투자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전기요금 인하라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가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조약인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파리협정 탈퇴 의사를 밝혔으나, 탈퇴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탈퇴 의사가 철회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탈퇴 의사를 통보하면 더 이상 그와 같은 형식의 철회가 되기는 어려운 만큼 실제로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장관 지명자인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는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입장이고 환경보호청장 지명자인 리 젤딘(Lee Zeldin) 역시 환경규제 철폐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파리협정 탈퇴가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면, 최악의 경우 다른 국가 역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거나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글로벌 기후대응 노력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트럼프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시장을 왜곡시키고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며 연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비용이 과다하며, 특히 해상풍력 발전은 해양 생태계를 훼손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 미국 전체 전력의 약 40%가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되며,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에서는 이 비율이 54%에 달하는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재생에너지 시장의 전반적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환경 규제 완화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 축소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환경 보호보다는 경제 성장을 중시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을 줄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혜택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다수를 차지했음에도 IRA 관련 혜택 축소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 할당된 IRA 지원금이 약 1610억 달러로 민주당 지역구의 약 420억 달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넘기 위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IRA 혜택의 전면 철회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미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였거나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등 IRA의 다른 혜택과 비교할 때, 세액 공제의 폐지는 향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미래의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인수팀은 미국 자동차 노동자를 보호하고 전통 자동차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최대 7,500달러씩의 세액 공제를 폐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세액 공제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전기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테슬라보다는 테슬라의 경쟁업체들에게 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흥미롭게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이 같은 인센티브 폐지가 경쟁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테슬라는 혜택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트럼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전문가



성김
고문
T 02.3404.0273
E sung.kim@bkl.co.kr



한창완
변호사
T 02.3404.1076
E changwan.han@bkl.co.kr



김지이나
변호사
T 02.3404.0698
E jeena.kim@bkl.co.kr

IV. 검찰 수사 동향과 전망

검찰 수사는 기업 경영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현안입니다. 특히 경영진의 리스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떤 분야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치적 급변 속에 검찰 수사의 향방이 더 크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불투명성이 큰 만큼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고객들께서 경영 판단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분석하고 검토했습니다. 먼저 2024년 동향을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 중심으로 정리한 뒤 2025년 전망에서 주요 분야별 검토와 수사 환경 변화 가능성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1. 2024 년 검찰 수사 동향

1) 기업 압수수색 관련 이슈

최근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상과 범위가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고, 기업 현장에서의 영장 집행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이유로는 기업 내부의 여러 관련 부서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과 디지털 증거에 대한 현장 선별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및 그 지휘를 받는 금융수사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음에 있어 법무 담당 부서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법무팀 관계자들의 휴대폰까지 압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각종 리스크 검토 자료나 사건 대응 자료를 보아야 하고, 사건 발생 이후 대응 과정에서 법무팀 관계자들이 증거인멸 등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을 법무 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팀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펌 변호인과 법무팀 간에 주고받은 의견서 등 의사교환 자료들까지 사건 관련 자료라는 이유로 압수하려는 입장을 보여 변호인의 조력권 침해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분간 기업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사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압수 범위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위법한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주요 형사이슈 발생 시 법무팀을 포함하여 어떤 부서든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리스크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이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선 불송치 권한을 갖게 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의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어 피고소인 등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불안한 지위가 유지되는 상황이 종종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더라도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 보완수사요구 처분하여 사건을 다시 경찰로 이첩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기에 경찰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지 않는 일반 고소사건 등의 경우 검찰 단계에 와서 본격 대응하는 것은 너무 늦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변론과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2025 년 검찰 수사 전망

1) 주요 수사 분야별 검토

(ㄱ) 기업 및 공정거래 수사

- **규제기관의 사전 조사를 활용한 기업수사 경향**

기업 수사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는 규제기관의 선행 조사 후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검찰의 공개매수 이용 시세조종 사건 수사와 시중은행 부당대출 의혹 수사 등도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나 특사경의 수사 후에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대규모 압수수색이 실시된 주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고발요청권 도입 후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6건에 대하여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플랫폼 기업 회계 감리 건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과실 유형으로 판단하면서도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처럼 규제기관의 사전 조사에 따른 고발, 수사의뢰 내지 관련자료 이첩 등을 단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은 규제기관의 사전조사를 적극 활용하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과 유관 조직이 협업하여 수사력을 집중하는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이 장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수사의 범위와 속도도 증대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사력 집중**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사건의 경우 과거에는 기소나 공소유지가 쉽지 않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대대적인 기업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검찰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대규모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규제기관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이 전통적인 대기업 이상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군은 특히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와의 대립구도에 의한 갑질 프레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경제사건·기업수사에 반부패 수사역량 적극 투입**

2024년 하반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수사하였고, 반부패수사3부도 증권사 및 건설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부동산 PF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2024년 9월 19일 취임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고, 실제로 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서의 경제사건 수사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2024년 하반기부터 검찰 수사의 기조는 경제사건, 기업수사로 선회한 것으로 관찰됩니다.

이른바 PF 부실 등 경기 불황, 투자자 및 소비자 피해사례 다수 발생, 금융당국 등의 감독활동 강화 등으로 수사 소재가 늘고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사건 수사를 중시하는 방침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ㄴ) 금융수사, 가상자산 수사

•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 적극 수사**

2024년 7월 17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에 각각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 전담조직이 신설·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 간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상가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하여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기초 조사하고, 검찰에 패스트트랙 1호 사건으로 통보한 직후 검찰의 신속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검찰 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 급상승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그

인식도 적극적 투자 대상으로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수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스캠코인 사기'와 '시세조종' 등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대한 신뢰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집중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감독원 조사가 검찰 수사로 직결되는 상황 빈발**

금융수사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금융감독원 내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조직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2024. 12. 10.자로 특사경 조직을 2개팀에서 3개팀으로 확대),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일체감 있게 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은 그 대표적 수사사례로서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 이후 첫 적용 사례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종래 금융권이나 증권가의 실무적 관행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피해 가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종래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행정제재로 마무리되었던 사안들도 수사로 전환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전방위적인 수사로 이어지는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부터 본격 수사에 대비하여 면밀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 1,2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등 금융 분야에 대한 탄탄한 수사 인프라와 자체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 및 지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부정거래에 대한 수사를 강도높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ㄷ) 중대재해 수사

-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적극적인 판단 경향**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중소기업들 위주로 사건을 처리하며 경영책임자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된 대기업 사건들을 처리하면서는 사업장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더라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검찰의 엄정 대응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의 아리셀 화재 사건과 같이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이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 차례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신병 처리도 적극 고려하여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는 경영책임자가 최초로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책임 여부가 가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상황이 수사 및 재판 실무상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관련 전문가를 통해 재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하여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선례 축적 및 주요 개념 정립으로 초기 수사 대응의 중요성 강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3년 가까이 중대재해 사건 기소·불기소 사례들과 하급심 판결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검찰에 중대재해 사건 처리 및 근로감독관 지휘 방향 등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구체적 해석, 인과관계 판단 기준,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정 기준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법리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여전히 관련 이슈가 남아 있지만, 기존 하급심 판결 등을 통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나 2단계 인과관계 성립 필요성 등에 대한 실무상의 기준은 어느 정도 도출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시 그 책임 여부와 직결된 건설공사발주자 이슈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검찰이 중대재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특사경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적극 지휘하여 수사 범위나 입건 대상 판단 등 사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경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기 단계의 수사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사를 대응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건설공사발주자,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종사자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신속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론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ㄹ) 영업비밀 수사

-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출범 및 수사 조직 개편**

정부는 2023년 11월 8일 각국의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은 같은 해 12월 26일 '사이버수사과'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개편하고 적극적인 수사 지휘 방침을 천명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를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경찰청은 같은 해 12월 4일자로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에 '방첩경제안보수사계'를 신설하고 '기술유출수사계'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각 지방경찰청은 기존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안보수사대로 격상하였습니다. 특허청도 2024년 2월 27일자로 기존에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등 침해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정규조직화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 기술 유출 수법 고도화에 대한 대응 제도 재정비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퇴직자에 의한 유출'입니다. 경찰청의 2023년 및 2024년도 상반기 통계에 의하면,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중 '내부인(임직원)'이 유출 주체인 경우가 80.9%에 이르고, 이 중 상당수는 경쟁사의 유인행위 등 가담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로커를 통한 제안, 국내기업 설립·고용, 인수합병 후 이전 등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수법이 고도화·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특정 및 입증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2025년 중에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가장 죄질이 중한 영업비밀 사용행위의 입증과 관련하여 '영업비밀 사용 추정'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침해자가 스스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부자 신고'가 수사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 유출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부고발을 감경요소로 포함하도록 양형기준표를 개정한 상태입니다.

• '영업비밀 침해 범죄' 양형 강화

대검찰청과 특허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에서 기본 권고형량을 해외유출의 경우에 '1년 ~ 3년 6월'에서 '1년 6월 ~ 5년'으로, 국내유출의 경우에는 '8월 ~ 2년'에서 '10월 ~ 3년'으로 상향하는 등 전체적으로 권고형량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향후 영업비밀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도 신병 구속 및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사 환경 변화' 주목

(ㄱ) 탄핵심판 등 정치 상황 급변으로 인한 영향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현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등 모든 관련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서 상설특검 요구안 뿐만 아니라 내란 일반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 주요 수사 부서의 상당한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현 정부 초기 야당 대표 관련 수사 등에 치중해 오다가 심우정 신임검찰총장 취임을 계기로 경제사범 수사를 강조하면서 2024년 하반기부터 경제사건 수사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을 중심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경제, 금융 관련 수사를 활발히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계엄사태 관련 특별수사본부 운영, 중앙지검 주요 간부의 탄핵에 따른 지휘라인 공백, 각종 정치적 급변 상황 등으로 인하여 당분간은 기존의 경제사건 중심의 수사모드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이후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니, 차기 정권의 향방에 따라 검찰 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같은 일련의 정치 일정으로 인해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동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당분간 대규모의 새로운 수사를 개시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탄핵심판을 거쳐 국정이 정상화되면 중·하반기 이후에는 각 수사기관이 미루어졌던 각종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검찰이 신뢰 회복과 검찰권 행사에 대한 공감대 확보 차원에서 각종 경제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소강 국면을 활용하여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 및 강화하는 등 사전 리스크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ㄴ) 검찰 개혁 법안 추진에 따른 변수

22대 국회 출범 이후 야당은 검찰 개혁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 법안들의 입법이 가시화될 경우 검찰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사 및 기소 체계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TF'를 구성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 공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처 신설(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조직범죄·마약범죄 등 수사), 중수처 감독을 위한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특정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수사청 설치(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금융범죄수사청·경제범죄수사청 등),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과 그 이후의 정치 상황과 연계되어 검찰개혁 법안 입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계속 상존하므로 이에 따른 영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ㄷ) '수사 경쟁' 등 여러 가능성 대비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 등 급변하는 정치 상황으로 인해 검찰 수사권 운용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치 상황의 변화는 비단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주요 수사사건의 사전 조사, 고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각종 기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통상적인 일상 업무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령이 촘촘하고 유관기관 간 자료제공과 고발 등 수사 절차와 관련된 부분도 법령에 의거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업 대상 수사나 금융 수사와 같이 대규모의 인력이 투입되고 기획·인지 형태로 진행되는 특수 수사와 달리, 중대재해·노동 등과 같이 관련 공공 분야 수사나 영업비밀 분야 수사 등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가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실무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최근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기관 간 수사권 경쟁 양상이 나타난 데서 알 수 있듯, 수사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에는 기관 간에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5년은 이와 같이 복합적이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정수봉
변호사
T 02.3404.0199
E soobong.jung@bkl.co.kr



조상철
변호사
T 02.3404.1984
E sangchul.cho@bkl.co.kr



최진원
변호사
T 02.3404.0944
E jinwon.choi@bkl.co.kr

V. 국회 입법 및 국정감사 전망



1. 입법 전망

1)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입법 환경의 변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정치상황이 급변하여 2025년은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불가피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여당의 22대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면, 2025년은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이 벽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은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더욱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면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여야가 바뀌는 상황도 전개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면 국회는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제시하는 선거공약이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의 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더욱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이 다시 집권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정부 정책 관련한 입법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선거를 통하여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입법 독주 상황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025년의 입법 전망은 정치상황의 급변으로

인한 대통령선거의 유무 및 그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2) 여야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화 가능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하거나 추진을 약속한 사항이나 2026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입법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협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따른 국가 신인도 회복,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우크라이나 및 팔레스타인 전쟁 등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외적 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여야가 협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AI(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방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은 여야의 공통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입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여야의 입장이 다른 사항은 정국 변화에 따라 입법화의 양상이 달라질 듯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현 정부의 정책 관련 법안은 정치상황 급변으로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야 입장차이가 큰 법률안에 대한 논의와 그 속도는 정치상황의 변화와 대통령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시행되지 못한 법안들도 다시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채해병 사망 관련 특별검사임용에 관한 법안」,「양곡관리법」 등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2025년 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과 관련 법안들을 상임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주요 내용 및 관련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 이사들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정무위원회	•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관련 법률안 • 가상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관련 2 단계 입법안
기획재정위원회	•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 및 증여세법개정안 • 재정준칙 도입 관련한 재정건전화법안
교육위원회	• 사립대학교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지역 의과대학 신설 관련 법안
국방위원회	• 전투장비 등 대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관련 법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영장주의 도입 관련 법안 • 글로벌 기업의 국내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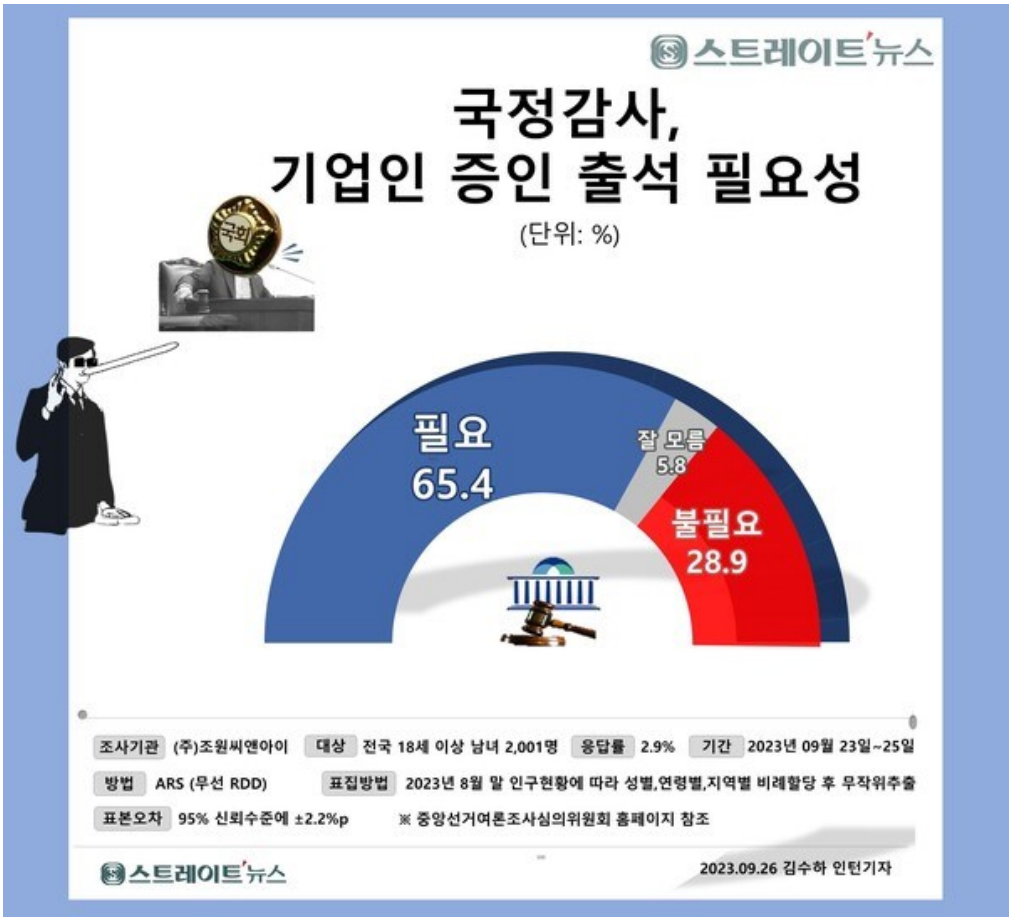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관련한 언론피해구제 법안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법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양곡수급 조절 정책 관련 양곡관리법개정안 • 농수산물가격안정제 도입에 관한 법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법안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관련 법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법안 • 해상풍력 보급 및 활성화 관련한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 필수 지역의료 지원 관련 법안 • 국민연금 개혁 관련 국민연금법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	• 주 4 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기준법개정안 •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노무제공 조건 등 보호 관련한 '일하는 사람'기본법안
국토교통위원회	• 재건축부담금 폐지 관련한 법안 • 안전·표준 운임제 도입 관련 법안

2. 국정감사

1) '기업 감사'로 흐를 가능성 농후

2024년 국정감사는 여야의 대치로 국가정책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다수의 상임위원회에서 기업 대표나 임원을 일반증인으로 출석시켜 국정감사를 진행함으로써 '기업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가 연중 계속 열리는 상시 국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가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상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국정감사는 기업에 대한 감사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대통령 보궐선거의 결과로 정권이 바뀌는 경우에는 새 정부와 전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혼재되는데다가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도 동일하기 때문에 정책감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상황의 변화로 인해 정책 감사보다는 기업 감사로 흐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스트레이트뉴스 2023.9.26)

2) 대통령 보궐선거 시 일반 증인 숫자에 영향 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성향의 정당이 야당으로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경우 국정감사에서 기업 대표나 임원 등을 일반 증인으로 다수 채택하고, 진보 성향 정당이 여당인 경우에는 일반 증인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진보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여당이 되는 경우 기업들의 사정을 좀 더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는 경우는 그 결과에 따라 일반 증인의 숫자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갑을 관계나 중대재해 등 사회적 이슈 발생 기업이 일반증인 대상

일반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경우는 갑을 관계 문제, 중대재해 또는 개인정보 침해 등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 만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년 후 2026년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구 민원 사항과 관련된 기업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소결

현 시점에서 2025년 국정감사 대상 기업을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2025년 국회의 국정감사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업 감사로 흐를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국정감사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기업이 세심한 주의와 관리 노력을 다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



최석림
변호사
T 02.3404.0654
E seokrim.choi@bkl.co.kr



조용복
고문
T 02.3404.1080
E yongbok.cho@bkl.co.kr



조의섭
고문
T 02.3404.6983
E euysup.cho@bkl.co.kr

Part 2 | 기업법무 / M&A



I. 2025 년 M&A 전망

1. 지역, 정책 이슈에 영향을 받는 M&A 증가 예상

1) 2024년 M&A 회고

2024년 상반기 글로벌 M&A 시장은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이 예상되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글로벌 M&A 거래액은 2023년 상반기 대비 5.3% 증가한 1조 3,20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갈등이 지속되고, 유럽과 미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등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 M&A를 보류했던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4년 9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하한 이후 11월에 또 한차례 0.25%p 인하를 단행한 바 있으며, 유럽중앙은행 또한 기준금리를 6월과 10월에 각각 0.25%p 인하하여 2024년 하반기에 들어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됨에 따라 2025년에는 글로벌 M&A 시장이 점차 호조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영향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감세와 세금 공제 확대 정책을 통해 소비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트럼프는 파월 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금리 정책에 불만을 표시해 온 바 있어, 향후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연방정부 예산 삭감을 통하여 정부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적극적인 가상화폐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그린뉴딜, 전기차 의무화 및 자동차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 등의 친환경 정책을 철회하고, 전통적 화석 연료 산업을 확대하며, 에너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와 같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미국 내로 재배치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국 국가안보를 우선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우선주의 제조업 육성책으로 인하여 미국 내 첨단산업 투자 및 인프라 증설이 전망되고, 이와 관련된 반도체, 기계장비, 화석연료 인프라 분야에서의 투자 및 M&A가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 중국 제재를 통하여 중국산 부품 및 원자재 대상 규제 강화를 꾀할 경우, 해당 부품과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인도 모디 총리 3연임 성공에 따른 영향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모디 총리 집권 첫 해인 2014년 285.7억 달러였으나, 모디 정부 집권기를 거치며 2022년 523.4억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모디 정부의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흐름은 지속되고, 국내 기업들도 인도 시장 공략 등의 목적으로 인도 투자 및 M&A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투자 확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2024년 2월 세계은행이 추산한 우크라이나 복구 비용은 약 4,86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 사업은 단순히 파괴된 시설을 건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친환경, 디지털 전환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 복구 비용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무상원조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며, 2023년 9월 민관합동 재건협력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여 전후 재건 프로젝트를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동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전쟁 종결 시기가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기업의 우크라이나 및 인근 국가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M&A가 예상됩니다.

2. 산업별 M&A 전망

1) 반도체



주요 기업의 감산 효과 등으로 D램, 낸드플래시 등 주요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며 주요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AI 관련 서버향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스마트폰과 PC 등의 전방산업에서의 수요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의 상승세에 힘입어 적극적인 투자 증가 및 해외기업 M&A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조선



친환경 선대 구축을 위한 신조선 발주로 인하여 국내외 조선사들의 신조선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의 경우 선별 수주를 통하여 LNG선과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수주 포트폴리오가 단순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산 효율성,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MRO 시장 진출 등도 예상되어 관련 M&A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2차 전지



2024년의 경우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였으나, 향후 금리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차량 구매 여건 개선 및 신차 출시 효과 등으로 판매량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미국과 유럽 등의 전기차 수요 위축(Chasm)과, 중국업체들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철회할 경우, 수요 감소로 인하여 2025년에도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 전기차·2차 전지업체 간에 합종연횡이나 산업재편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방산



지난 몇 년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무력충돌이 확산되는 가운데 안보환경이 불안정하게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각국의 방위비 증가를 야기하여 전세계 방위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국내 방산업체 수출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국제적 분쟁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방산업계의 성장세, 해외 수출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원자력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의 원자력 발전 및 SMR(소형 모듈 원자로)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원전업체들의 원전 시공 및 운영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원전수주, 수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투자, M&A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의 Deal과 구조조정 관련 전망

최근 주요 대기업들은 사업별로 선택과 집중, 사업 시너지 극대화, 주주가치 제고 등을 명분으로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인적·물적 분할, 영업양수도 등).

위와 같이 대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최근 M&A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예를 들어 과거 상장법인이 인적분할 시 그 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관행적으로 분할신설법인의 신주가 배정되어 왔으나, 2024년 6월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해당 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아래 II.3.1) 참조).

이외에도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서 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 더하여 '주주'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그간 대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왔으며, 이에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사업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도록 법제화한다는 의도로 이해됨. 아래 II.4.1) 참조).

이러한 향후의 법령 개정 등을 감안하여 2025년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 목적의 Deal이 상당수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사모펀드(PEF)에 의한 M&A 관련 전망

<사모펀드 최근 동향>

연도	운용사(GP) 수	누적 출자약정액	누적 출자이행액	기관전용 PEF 투자집행액	미집행 약정액
2023	422	136.4조원	98.9조원	32.5조원	37.5조원
2022	415	125.3조원	97.1조원	36.9조원	28.2조원

최근 국내 M&A 시장에서는 PEF가 주요 player로서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수는 422개로 전년보다 7개 늘어났습니다. 또한, 2023년 누적 기준으로 투자자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금액(약정액)은 136.4조원이고, 실제로 출자한 금액(이행액)은 98.9조원으로, 이는 2022년도 대비 각각 약 8.9%,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2023년 기준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집행 규모는 32.5조원으로 2022년 36.9조원 대비 11.9% 감소하였으며, 추가 투자여력을 나타내는 미집행 약정액(dry powder)의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37.5조원으로 2022년 28.2조원 대비 33%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기준 M&A 및 IPO 등 방식의 최종 회수 규모는 10.8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2023년 기준 배당이나 제3자 매각과 같은 중간 회수 규모는 8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48%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집행 규모와 함께 M&A 등 최종 회수 규모가 줄어든 것은 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국내 M&A 시장이 위축되었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운용사들은 인프라 펀드 등을 도입하여 산업폐기물 처리장, 데이터센터 등으로 투자 범위를 다양하게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프라 펀드들이 기존의 도로, 항만 등 전통 SOC에 벗어나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를 늘리는 경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금리인하 지연으로 인하여 사모펀드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금이 이전보다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사모펀드들이 재무적 투자자(FI) 및 전략적 투자자(SI)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거래에 참여하는 모습도 종종 발견됩니다.

한편, 최근 사모펀드들은 저평가 기업이나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Buy-out 전략 대신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동주의 경향을 띠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국내기업은 77곳으로 2019년 8곳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도 관련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최근 국내 M&A 시장의 위축으로 매력적인 매물이 적었고, 사모펀드들의 미집행 약정액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 때문에, 사모펀드들이 대안으로 행동주의 전략을 택하였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모펀드가 공개매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금을 미리 예치해야 했으나, 2023년에는 출자자들이 발급한 출자확약서(LOC)만으로도 공개매수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점이 사모펀드가 행동주의 전략을 택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사모펀드들의 행동주의 전략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경영권 분쟁에 따른 M&A 증가 전망

한미약품, 아워홈, 고려아연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경영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증가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① 승계과정에서 상속세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함에 따라 2대 주주와 지분율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② M&A 시장 위축으로 사모펀드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다는 점, ③ 국내 기업의 가치가 주식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인하여, 낮은 취득 단가로 사모펀드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오너가(owner family)들이 사모펀드와 연합하여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분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분쟁에 그치지 않고, 소액주주를 우호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면서 자사주 매입, 유상증자,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방안의 실행에 따라 분쟁 양상이 복잡 및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속으로 인한 지분 희석과 경영권 승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련 M&A, 구조조정 및 경영권 분쟁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I. M&A 관련 규제 도입, 감독 강화 및 분쟁 전망

1. M&A 트렌드 변화에 따른 규제 도입 및 감독 강화

1) 경영권 분쟁 증가로 인한 감독 강화 및 관련 규제 도입 가능성

최근 한국앤컴퍼니, 고려아연 등 주요 상장회사와 관련하여 공개매수 방식을 통한 사모펀드의 경영권 인수 시도가 있었고,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의 시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영권 분쟁에 따른 단기간의 주가 급등락과 그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 등 우려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은 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및 공개매수 주관사인 증권사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에 착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최대주주와 2대주주 간의 지분율 격차가 크지 않고 기업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장회사들을 중심으로 공개매수 등을 통한 경영권 인수 시도 및 그로 인한 기존 대주주와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의 감독 또한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경영권 분쟁 사례와 관련하여 회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 주주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그간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입되지 못했던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주식 25%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해당 취득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 + 1주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공개매수 방식으로 잔여 주주로부터 매수하여야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향후 이와 관련한 입법 진행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ESG 측면 중요성 부각 및 공시 등 관련 규제 도입 예정

글로벌 사모펀드, 특히 유럽계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 대상 기업의 ESG 성과 및 위험을 고려하여 기업가치의 산정에 있어서 ESG 측면에 따른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를 적용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는데, 당초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공시 준비에 따른 기업들의 고충을 고려하여 도입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향후 ESG 공시 등 관련 규제의 도입 및 그로 인한 ESG 측면의 중요성 부각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M&A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며, 특히 M&A 대상회사가 유럽에 소재하거나 유럽 소재 국가에 수출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EU 지속가능성 보고표준, 공급망 실사지침을 비롯하여 ESG 관련 원칙과 공시를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수주주 보호, 대주주 견제 및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관련 규제 가능성

1)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 도입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보유한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 거래 시(과거 6개월 합산 기준) 지분 변동에 관한 정보(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거래개시일 30일 전에 미리 공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억 원 한도로 시가총액의 1만분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연기금 등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과,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는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2)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가능성

현재 국회에 상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고, 이러한 개정안들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전반적으로 소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를 견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보호한다는 찬성론과 주주들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있고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서, 향후 입법 진행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에 한정된 규제를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발의되었습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들에게 자회사 공모신주를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고,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기존 5년의 기간이었던 거래소 심사 기간을 폐지하여 기간 제한 없이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살펴보고 상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물적

분할을 우회할 수 있는 영업양도 및 현물출자 등의 기업 분할 형태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장법인들은 새로운 부담을 감안하여 M&A 거래구조 및 기업지배구조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일반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구조 변화와 무관하게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주주 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촉진 관련 제도 도입

한국 기업은 자본효율성이 낮고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 유관기관들은 2024년 2월 26일 규제개혁 등 기업의 성장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증시의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즉, 배당액이 결정된 이후 배당기준일이 도래하게 함)을 반영하여 상장회사 표준정관이 개정되고 상장회사의 적극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분기배당 관련해서도 매분기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2024년 6월 5일부터 시행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2025년에 제출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항목을 신설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접근방법, 투자자와의 소통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항목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 일자,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이사회 참여 여부와 주요 논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구체적인 투자자 소통 일자, 소통 대상, 소통 채널, 소통 과정에서의 임원 참여 여부 등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와 관련된 기업의 노력 및 주주와의 소통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상장회사 관련 기타 규제 도입

1) 자기주식 제도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는 2024년 6월 4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사안	주요 골자
인적분할	•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상장법인 합병	•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소멸회사 주식 및 소멸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자사주 보유 비중 5% 이상 상장법인	• 자사주 보유 현황, 보유 목적, 향후 처리 계획(추가 취득, 소각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고, 이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첨부 서류로 하고, 그 내용을 사업보고서에도 기재(공시)
자사주 처분	•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도 공시
자사주 신탁 취득	• 최종 취득 금액이 계획·공시했던 금액보다 적으면 사유서 제출 •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이후 1 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 • 신탁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자사주 처분 주요사항보고서 공시하도록 함.

2) 전환사채·전환주식 등의 전환가액 관련 규제 도입

전환사채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증발공 개정안이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주식 등의 전환가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사안	주요 골자
증자, 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하향 조정(refixing)	• 전환가액은 희석효과를 반영한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 이상으로만 하향 조정 가능 • 시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의 경우 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
사모 전환사채 발행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납입일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 (기존의 청약일이 아닌) 납입일 전 제 3 거래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반영하여 전환가격을 산정
전환주식의 발행가액	• 전환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따라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전환가액의 재산정 및 그로 인한 발행가액의 변동으로 인해 인수인이 취득하는 지분율이 당초 예정했던 것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합병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제도 관련 규제 개선

합병가액 및 외부평가의무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계열회사인 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 산식이 적용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합병가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계열회사인 상장법인(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년 내에 계열회사였던 회사 포함)간 합병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합병가액 산식을 적용하고, 외부평가기관 선임 시 감사의 동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비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글로벌 정합성을 위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외부평가제도를 강화하여 일반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4년 12월 3일 국회에서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합병가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대신 주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및 이사회가 작성한 합병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일반주주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향후 입법 동향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4. 이사회 역할·책임의 강화 및 소액주주 관련 분쟁 증가 가능성

1)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관련 법률 개정 가능성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은 '회사'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즉, 상법상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 중 상당수는 주주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향후 이러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이사들은 모든 이사회 안건에 대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및 그에 따른 배임 등 책임을 이슈로 하는 경영권 분쟁이 증가할 수 있고, 대표소송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의 이사를 상대로 한 분쟁 제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로 인하여 소액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전체 기업에 대한 상법을 개정하는 대신, 상장법인에 한정하여 제한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2) 합병 결정에 대한 이사회 검토 및 공시 의무 강화

앞서 본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발공 개정안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을 추진하는 상장회사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견서는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되어 공시됩니다.

-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 합병가액의 적정성
-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그간 합병 관련하여 이사회의 판단이 공시되지 않아 일반주주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의 배경과 경제적 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견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이사회가 안건에 대한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그간 공시자료만으로는 합병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도입으로 인하여, 이사들은 합병이 회사에 필요한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경영판단원칙을 비롯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강화되는 한편, 의견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소액주주와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전문가



윤성조
변호사
T 02.3404.0196
E sungjo.yun@bkl.co.kr



안현철
변호사
T 02.3404.6541
E hyunchul.an@bkl.co.kr



오명석
변호사
T 02.3404.6587
E myoungseok.oh@bkl.co.kr

Part 3 | 인사노무

삼각파도가 몰려오는 2025에 주목하라!

정부정책과 입법 동향

고용 연장 방식
(정년 연장 vs. 정년 후 재고용)
- 근로시간 유연화
- 취약 근로자 보호
- 산업안전 강화



예상되는 중요한 사법부 판결

대법원
- 통상임금 재직조건
- 원청의 사용자성
- 사기업의 경영성과급

하급심
-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 후 근로조건
- 근로자성(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경기침체 및 권리의식 상승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 영역

- 희망퇴직
- 정리해고와 통상해고
- 계열사 전적
- 직장 내 괴롭힘
-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 노동조합 설립을 통한 권리 주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무제공자)

I. 정부: 정책 및 규제 전망

1. 정년 연장 입법 움직임 및 정책 방향

인구구조의 변화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현행법상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불일치 등에 따라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으나, 일률적인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고령자 고용 연장 방식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현 단계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현행법상 정년(60세)을 유지하되,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을 촉진하고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년 이후 촉탁직·계약직 등 방식으로 재고용을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 장려금 등 지원을 강화하여 재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년 연장과 맞닿아 있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 역시 202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제도개선 추진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안」(이하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 및 연구개발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하여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토록 하는 것이므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형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1] 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방법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상 특례 조항을 통하여 예외를 허용하기보다 근로기준법상 선택근로제나 탄력근로제 등 기존 제도의 활용이나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정부·여당은 업종별 근로시간 산정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선하는 등 전반적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도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1]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는 미국이 1938년 도입한 제도로, 고위 관리직과 전문직, 고소득자 등은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일본도 2018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 취약근로자 등 보호 방안 강화

2025년에 취약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 추진이 예상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과 연장근로 등에 따른 가산임금(제 56 조), 휴업수당(제 46 조), 연차유급휴가(제 60 조) 규정 등 근로자의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규정들은 상시 근로자 수 5 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 - 2023 년 기준 국내 전체 근로자의 약 30% 정도가 5 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 • 정부는 노동계 등의 요구를 수용하여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 - 다만, 5 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확대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노사정협의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
노동약자 등 보호 강화	• 이른바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예상 -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미조직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근로자이음센터를 확대(2025 년에 총 10 개의 근로자이음센터 운영 계획) • 저출생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육아지원책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 만 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급여 25%를 복직 후 6 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제 폐지 -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등
임금체불 등 엄정대응	• 현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의 중요 정책 목표의 하나가 임금체불 해소 • 2025 년에도 이러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노동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 - 상습 체불업체 제재강화 - 노동현장 불법관행 개선 및 노사법치 확립 - 중대재해 감축 추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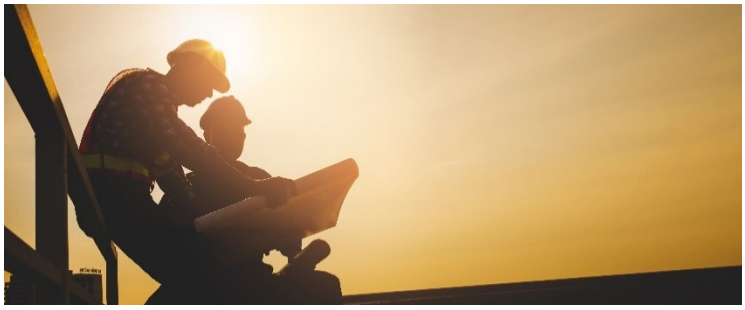
4. 산업안전 강화

정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산업안전 강화 기조를 이어가되, 처벌에 앞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소를 찾아내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조치를 통해 자기 규율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관리하고,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 일반근로자 등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마련하고 담당자와 참여자를 선정하는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위험성 수준을 판단 및 결정하며, 우선순위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시하는 등 위험성평가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노사단체: 방향성 및 활동 전망

1. 노동계



노동계는 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② 정년 연장, ③ 사용자의 범위 확대 및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한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이른바 '노란봉투법'),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와 권리보장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영계



경영계는 크게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임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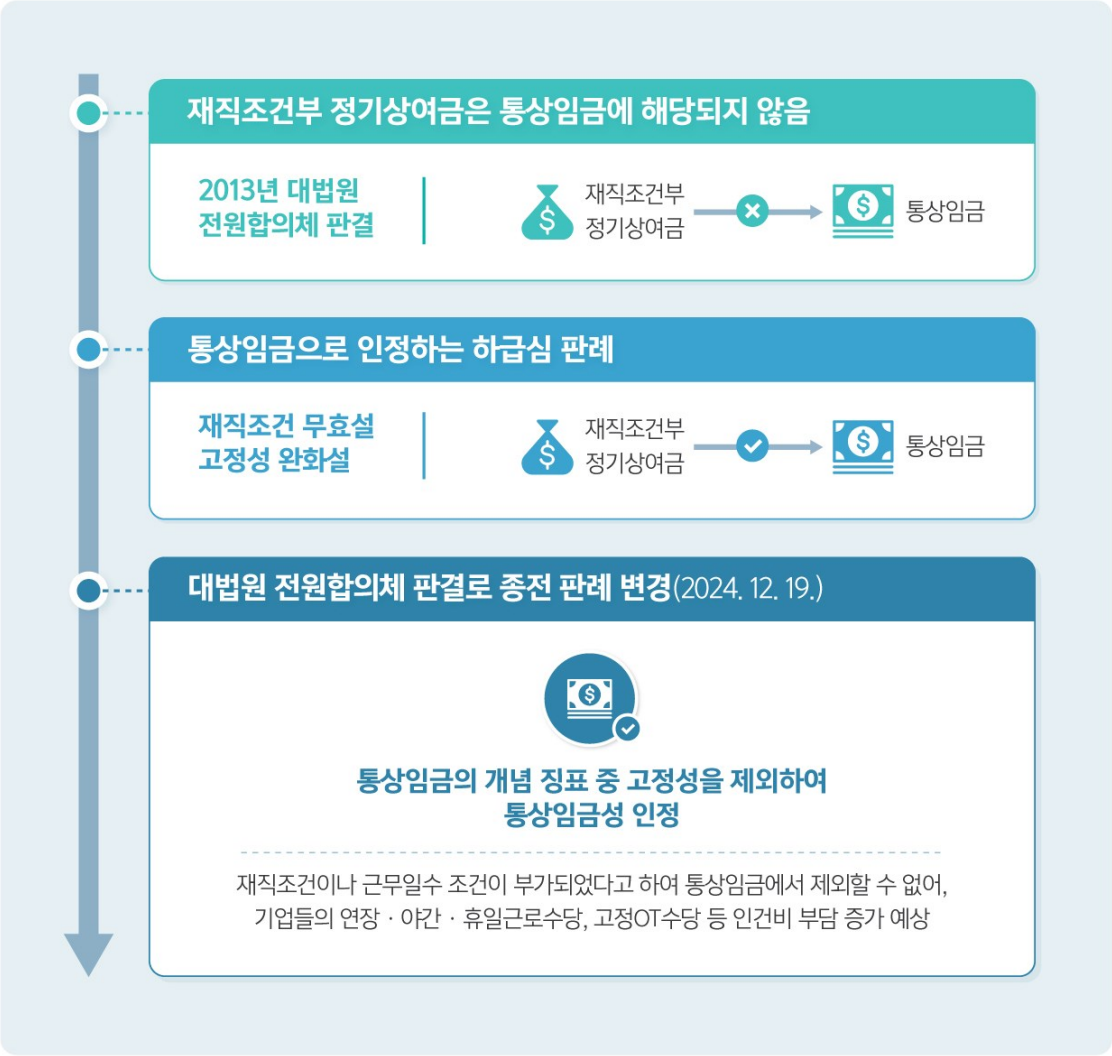
합리화를 요구하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하여 사업장 점거금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노동계의 요구사항에 대비하여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선호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요구에 대하여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확대 방안을 기대하며, 노란봉투법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법원: 대법원 판결 선고 및 분쟁 추세 전망

1. 대법원 판결 선고 전망

1) 통상임금 재직조건 사건



대법원은 2024. 12. 19.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조건 또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2013년 전합판결')이 제시한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2024년 전합판결').

즉, 2013년 전합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는 소정근로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고, 그중 고정성은 통상임금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그것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전확정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사전에 충족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전합판결은 2013년 전합판결이 제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고 함으로써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고정성 개념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통상임금의 강행적 성격과 맞지 않다는 점, 통상임금은 실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 조건을 통하여 사후적 변동가능성이 있는 '실근로'를 통상임금과 연계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사전적 산정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점 등을 들어 고정성을 폐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에 입각하여 대법원은, 재직조건부 임금의 경우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경우에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 5일제 사업장에서 15일의 근무일수 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5일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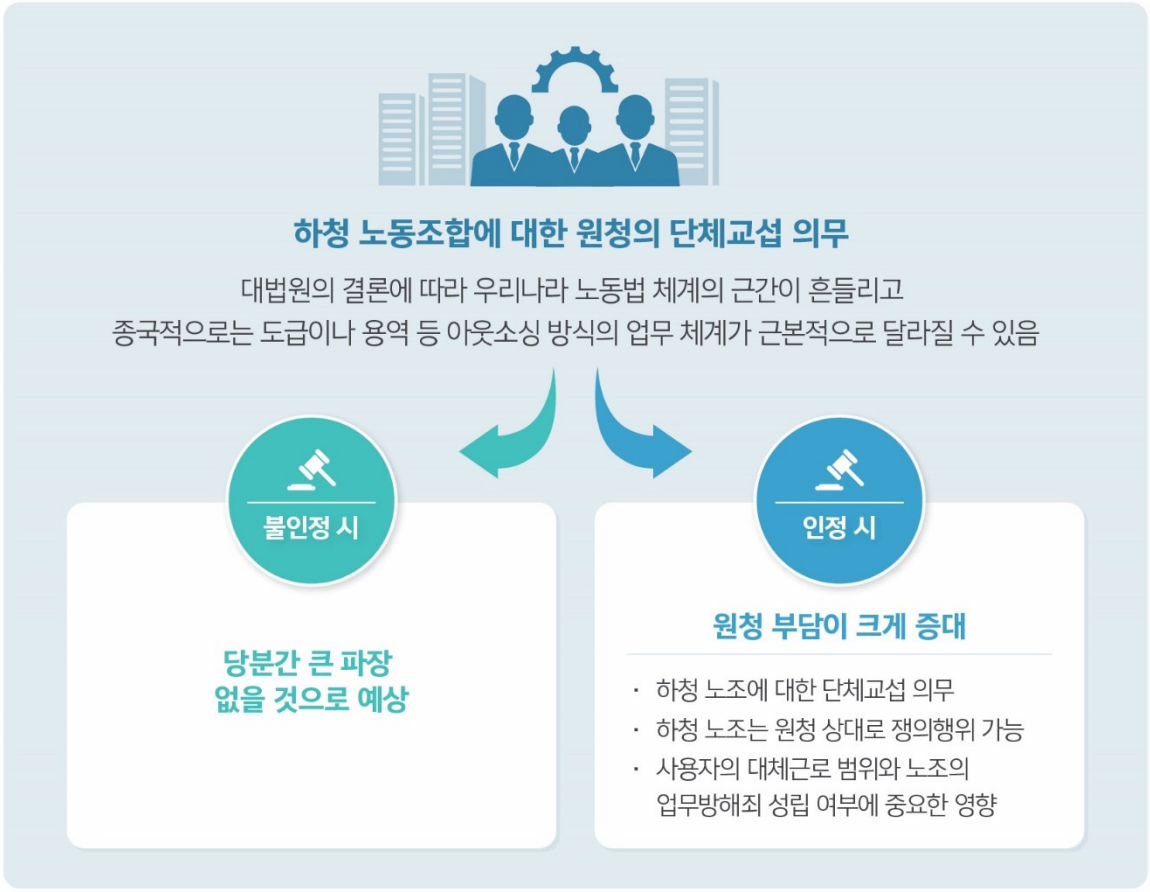
다만 대법원은 2013년 전합판결을 변경함에 따라 수많은 노사 당사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법적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2024년 전합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되, 당해 전합 사건 및 2024년 전합판결 선고 시점에 그러한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들에 대하여는 새로운 법리가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2013년 전합판결에 따라 법원의 판결, 고용노동부의 행정실무와 노사 현장에서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확고하게 자리잡아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전격적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법리를 판시하였고, 2024년 전합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하기는 하였지만,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 사건만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당장 통상임금 산정부터 고정성을 폐기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어 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만 정의되고 가상의 개념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일견 간명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과의 구별이 어려워져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를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비교해 볼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고정OT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이를 증액해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에서 '소정근로일수'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등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원청의 사용자성 사건



원청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2018년 대법원에 올라온 현대중공업 사건(사내하도급 사안)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심리 중인 상황에서 2024년 CJ대한통운 사건(위수탁 용역계약 체결 사안)이 대법원에 올라왔습니다. 현대중공업 사건의 원심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부정하였고, CJ대한통운 사건의 원심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의 해석상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 체결의무가 인정되는데, 노동계를 중심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단체교섭 영역에서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하급심 판결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만약 단체교섭 영역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어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할 경우에 원청으로서는 수많은 하청 노동조합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되며,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근로의 범위와 노동조합 측의 업무방해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종국적으로는 도급이나 용역 등 아웃소싱 방식의 업무 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이 쟁점은 입법의 영역인 '노란봉투법'과도 관련이 있어, 대법원이 국회의 노란봉투법 추진 경과에 비추어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가 관심입니다.

3) 사기업의 경영성과급 사건

사기업에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산정 시에 산입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사기업에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2018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하여도 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가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주요 대기업의 관련 사건이 계류 중에 있어, 대법원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온 국내 주요 사기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 하급심 법원 판결 주목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후 근로조건의 설정 문제

대법원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이를 적용하는

데 있어 논란이 있고, 여전히 불법파견을 주장하는 분쟁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에 관한 법리가 정립된 이래, 최근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이후 근로조건의 설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2019다222836 판결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자파견관계 성립된 경우에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원의 규범적인 판단이 가능해짐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후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다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경향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vs.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를 다투는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 및 취업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노무 제공자들이 근로자성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은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최근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최초의 판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분쟁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분쟁의 추세 전망

글로벌 경기침체 분위기와 맞물려 2025년에는 국내기업 또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희망퇴직, 정리해고나 사업의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 계열사 전적 등에 따른 HR 이슈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의식 증대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관련 분쟁, 안전한 직장이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산업안전, 중대재해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설립 등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별 관련 영역에서도 차별시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비교대상 근로자를 판단할 수 있고, 실제 존재하지 않더라도 직제상으로 상정할 수 있으면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에 따라 차별을 인정받는 것이 전에 비해 용이해진 면이 있으므로,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



김성수
변호사
T 02.3404.0673
E seongsoo.kim@bkl.co.kr



김상민
변호사
T 02.3404.7545
E sangmin.kim@bkl.co.kr



박은정
변호사
T 02.3404.0598
E eunjung.park@bkl.co.kr

Part 4 | 공정거래

I. 공정거래 규제 개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민생, 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이라는 주제 하에, 아래 4가지 사항들을 핵심 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 하도급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 피해기업의 손해배상 지원 • 외식 가맹점주,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관행 근절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담합과 경쟁제한적 규제를 시정, 개선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 모바일상품권, 적립금 등의 환불기준, 유효기간 개선 • SNS 마켓, 숏폼 등 디지털 환경 소비자 피해 집중 점검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 대기업집단 범위 합리적 설정, 부당내부거래 엄단

이에 따라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부당특약 사법상 무효화, 알리·테무 등 해외 직구 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및 LTV·국고채 등 금융사 담합 조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경쟁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민생 챙기기,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2024년에 진행한 각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가 활발히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배달앱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업종에 대한 집중 조사가 예상됩니다.

II. 공정거래 질서 확립

1. 반도체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에 NXP, Texas Instrument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반도체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조사가 계속 중이며 2025년에 조사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 2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반도체 팹리스 산업의 특징으로 1~5개 소수 선도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AMD, 인텔 등이 신규 진입으로 경쟁 체제가 형성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쿠다(CUDA) 설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빠른 기술 개발로 우월적 지위와 시장 집중화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

을 것'이라고 하면서 '경쟁 당국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경쟁 관련 주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EDA 소프트웨어 제품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끈 미국 시높시스 등은 기술 우위를 핵심 역량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이런 우월적 지위의 핵심 EDA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자사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호환성을 지렛대로 신규 회사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자사 EDA 소프트웨어 판매에서 대리점 등에 재판매가격이나 이윤을 제한하는 행위 등도 가능해 경쟁당국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에 AI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생성형 AI 개발 시장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클라우드 사업자, AI 반도체(가속기) 사업자 및 국내 팹리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2024년 말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에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시장 집중화가 상당히 심화된 것으로 언급된 AI 반도체(가속기) 시장, EDA 관련 시장, 파운드리 시장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1) 반도체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인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 건, (2) 미국 반도체 기업 AMD와 AI 관련 서버 제조업체인 ZT시스템스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 결과가 2025년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플랫폼 규제 입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배달앱 3사, 버티컬 플랫폼(패션, 생활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고, 2025년에도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의체를 통해 업주 부담 배달앱 수수료율, 배달비를 도출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민생현안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시도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달앱 외에 민생과 직결되는 각종 플랫폼 분야에서 자율 협의체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입법 논의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대 국회에 이미 19건의 플랫폼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은 기존 공정거래법에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서 입법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양 당 모두 시장지배력이 강한 대형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요구 등의 행위를 보다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사전 지정 방법과 사후 추정 방법, 지정 요건 및 법위 등 세부 규제 방법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Part 5의 1항 참조)

III.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확립

1. 하도급 조사 강화 및 납품대금 연동제 조사

2025년에는 건설 경기 침체 등 불경기가 예상되는 바, 하도급 거래에서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신산업하도급조사팀, 기술유용조사과를 신설하였는 바, 2025년에는 그간의 조사 성과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프트웨어, 콘텐츠제작과 관련된 사업자들은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로봇, 센서, 생활가전, 에너지설비 등 기술자료 유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의 사업자들은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전 교부하고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시에 관한 실태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 10.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되었으나, 다수의 기업들이 협력사의 미연동 합의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시율이 현저히 낮은 점이 지적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연동 합의 강요, 하도급 계약 쪼개기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 미실시를 위한 탈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갑을 관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 챙기기, 양극화 방지의 일환으로 갑을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전속대리점 실태조사, 대리점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지적된 업종 위주의 직권조사 실시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024년 대리점서면실태조사 대상으로 추가된 여행업계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를 기초로 후속 직권조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불공정관행, 카드결제 거부 등 물품대금 결제방식 현황 등에 관한 조사가 예상되며,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및 배달업체(플랫폼) 간 영업지역 설정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전문판매점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적된 업태에 대한 직권조사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중개 플랫폼에 대하여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데, 중개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IV. 기업집단 규제 및 카르텔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 불리한 기업집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개선 작업에 주력해왔는데, 향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내부거래(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 행위)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11월말 발표된 내부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25년에는 대기업 집단보다는 식품, 제약, 의류 등 물가와 연결될 수 있는 분야의 '중견 그룹'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2021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정보교환 합의가 담합의 한 유형으로 신설되었는데, 정보교환 합의 유형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4대 은행 LTV 담합 건에 대한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2025년에는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2025년 중에 PD사들의 국고채 담합 건에 대한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설탕, 음료 등 민생 물가와 관련된 시장에서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달청 등 타 기관으로 이첩받은 사안에 대한 입찰담합 조사도 적극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



김홍기
변호사
T 02.3404.0489
E hongki.kim@bkl.co.kr



강태욱
변호사
T 02.3404.0485
E taeuk.kang@bkl.co.kr



윤주호
변호사
T 02.3404.6542
E juho.yoon@bkl.co.kr



강정희
변호사
T 02.3404.6480
E jeonghee.kang@bkl.co.kr



김규식
변호사
T 02.3404.0945
E kyusik.kim@bkl.co.kr

Part 5 | 온라인플랫폼 및 AI 규제 동향

I.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공정거래법 개정안

- 공정위 및 국민의힘 주장
-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금지
- 제재수단: **관련 매출액의 8%**

플랫폼 입법

온플법 제정안

- 민주당 주장
-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데이터 이동/접근 및 제한 금지 추가**
- 제재수단: **관련 매출액의 10%**

대규모 유통업법

-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도 적용
- 티몬, 위메프 사태와 같은 판매대금 정산 지연 방지를 위하여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

플랫폼 **조사** 동향

배달앱 사업자들에 대한 직권조사 계속	구글과 일부 대형 게임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조사 예상	주요 플랫폼들에 대한 **다크패턴 실태조사** 실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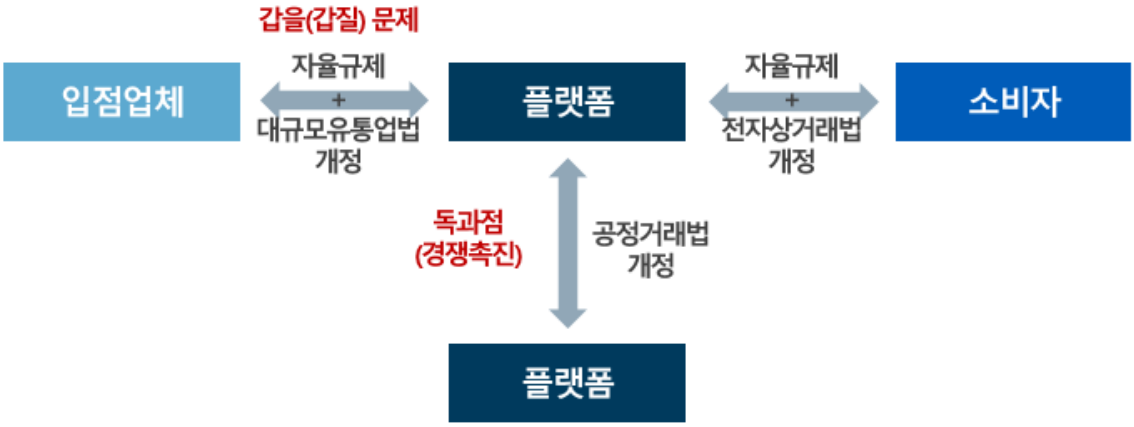
1.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12. 29.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4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수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플랫폼 규제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입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2024. 10. 28.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을 통한 의원입법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온플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형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 2. 14.부터 다크패턴 규제가 시행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과 입점업체·납품업체 간의 거래에서 입점업체·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2024. 10. 28.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을 통한 의원입법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온플법 제정안 입법 논의

국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민주당 중심으로 발의된 온플법 제정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법안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플랫폼에 대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강화된 규제를 담고 있는데, 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하는 방식과

지정요건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양 법안 모두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온플법 제정안은 추가로 데이터 이동 및 접근 제한 금지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관련매출액의 8% 혹은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 강민국 의원안(2204947, 공정거래위원회)	온플법 제정안 - 김남근 의원안(2201416)
지정 방식	사후 추정	사전 지정
지정 요건	① 시장점유율 60% 이상, 국내 월평균 이용자수 1천만명 이상 또는 ② 3개 이하 회사 시장점유율 85% 이상 & 해당 플랫폼 국내 월평균 이용자수 2천만명 이상인 경우(시장점유율 20% 미만 사업자는 제외) ※연간 매출 3조원 미만 제외	① 평균시가총액/공정시장가치 15조원 이상 ② 직전 3개 사업년도 기준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 ③ 국내 월평균 이용자수 1천만명 또는 이용사업자 수 5만명 이상
금지행위 내용	① 자사우대 ② 끼워팔기 ③ 멀티호밍 제한 ④ 최혜대우요구	① 자사우대 ② 끼워팔기 ③ 멀티호밍 제한 **④ 데이터 이동/접근 등 제한** ⑤ 최혜대우요구
기타 의무		검색/노출순위 기초자료, 표시 기준 등 공시, 공정위에 사업개요, 공시 현황 등 보고서 제출
경쟁제한성의 추정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정당한 이유/ 경쟁 제한성 추정 번복사유	① 경쟁 제한 없는 등의 경우 또는 ② 정보 보호 및 안전 확보 등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 달성 어려운 경우	
제재수단	임시중지명령, **관련 매출액의 8%**	임시중지명령, **관련 매출액의 10%**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온플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온플법을 별도 제정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은 별도 법률 제정 없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2025년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한 (i)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할 것인지, 사후 추정할 것인지, (ii) 지정 대상인 플랫폼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iii) 4~5가지 금지행위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업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입법 논의

2024. 10. 28. 발의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전연도 연간 국내 중개거래수익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포섭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중개플랫폼들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하게 계약서 사전 작성 및 교부 의무, 판촉비용 전가 금지, 배타적거래 강요 금지,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티몬, 위메프 사태와 같은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의 대금 관리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중개거래의 정의, 매출액 및 거래액 기준과 관련하여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개 플랫폼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제정 당시 온라인 중개 거래를 전제하지 않았음)을 적용할 경우에 규제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플랫폼 조사 동향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7월 배달앱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조사가 202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상생협의체를 통해 배달수수료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배달앱과 관련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자율 규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구글과 일부 대형 게임사가 인앱결제 수수료를 리베이트 형태로 합의한 사안에 대해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였는바, 이에 대한 조사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5년 2월 14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플랫폼대상으로 다크패턴 실태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가격을 알리는 첫 화면에서 재화 등의 구입에 필요한 총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미리 선택된 옵션을 제공하여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는데, 플랫폼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전에 자사 플랫폼에 다크패턴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AI 규제 동향



1.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1) 개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안')이 2024년 11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빠른 시일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19개의 발의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인공지능 기본법안은 크게 ① 인공지능 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부분(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정책센터,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 ② 인공지능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관한 부분(산업기반 조성,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③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한 정부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공지능 윤리원칙의 마련 및 자율규제, 안전성 확보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인공지능 직접단지를 지정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이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 시스템'의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담하며, 그 이행 결과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및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기업이 개발한 제품·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인공지능사업자들에게 부과된 의무 등을 미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중지명령 또는 시정명령 외에 다른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시사점

인공지능 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 형태의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는 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인공지능 기본법안에 담긴 규제와 지원 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영향 인공지능 및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법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제공 기업은 서비스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 준수를 준비해야 하고, 생명, 안전,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면서 AI 영향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지 의무 미이행, 중지명령·시정명령 위반, 국내 대리인 미지정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국내·외 기업의 사업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관리 체계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안은 인공지능 특화단지 지정 및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환경을 제공하는 만큼 관련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R&D 강화 및 데이터 인프라 확충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동 법안이 강조하는 신뢰 기반 조성은 단순히 규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활용을 요구하므로 기업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안은 이후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 후속절차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인공지능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기술과 법률 간의 간극을 좁히고, 기업과 정부가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에는 인공지능 기본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법령 제정 및 AI 기술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진행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부의 AI 관련 정책방향 및 제도 마련



1) 불법적인 딥페이크 규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입법 동향

2024년 8월부터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의 합성, 유포가 이루어지는 등의 피해사례가 공론화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 16일 AI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불법적인 딥페이크 합성영상으로 인한 범죄 및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또,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게시·상영·유통을 확인한 사법경찰관리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할 의무를 부과(제38조의2)하는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최근의 '딥페이크 사태'와 관련하여 발의된 일련의 규제법안 중 2024. 9. 20.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현재 입법예고 단계(2024.10.16~2024.10.25)를 거쳤으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임)에는 성폭력처벌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소정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허용하는 내용(제5조 제13호 신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터넷 검열·감청'의 과도한 확대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기술 관련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인 규제와 헌법상 기본권 또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촉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본법 또한 딥페이크를 포함한 생성형 AI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는 워터마크 등 기술적 표시를 통해 AI를 사용하여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영향 AI에 포함되어 더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AI 단계별 6개 가이드라인 제정 현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2024. 12.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AI 개발 및 서비스 과정을 기획 및 데이터 수집 단계, 데이터 학습 단계, AI 서비스 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 접근합니다.

6개의 가이드라인 중 ①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2024. 2. 2.) ②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2024. 5. 30.) ③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024. 7. 17.) ④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2024. 10. 14.)는 이미 발간되었고 ⑤생체인식정보 가이드라인 ⑥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AI 기술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별 기술의 리스크 수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보상 체계 관련 동향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 학습용 데이터로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AI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 그룹'을 2024년 말까지 운영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법·제도 정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도 AI 학습에 이용되는 어문저작물의 적절한 대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이 제도 정비안은 AI 학습에 필요한 저작물 사용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 AI 정책보고서 발간 및 생성형 AI 시장 정책방향 공개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므로 G7 경쟁당국 등과 EU 집행위원회는 2024. 10. 3~4.일 양일에 걸쳐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경쟁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하였고,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각국 경쟁당국은 잇달아 경쟁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역시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 및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관련 경쟁·소비자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50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방식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4. 12. 17.「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i) 생성형 AI 가치사슬 현황, (ii) 국내 생성형 AI 시장 경쟁상황 분석, (iii) 경쟁·소비자 쟁점 분석 및 과제, (iv) 향후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I 반도체 시장,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데이터 시장, AI 서비스 시장으로 나누어 시장 경쟁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생성형 AI 개발에는 대규모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 이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 구조적 특성이 나타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 역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i) 필수요소에 대한 접근 제한, 고객유인 및 이탈방지, 기술 부당이용 등 단독행위 (ii) AI시장에서 자금력이 풍부한 수직통합 사업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파트너쉽을 체결하는 등의 기업결합 (iii) AI 사업자가 데이터 수집 시 실질적 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등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AI 시장의 경쟁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조사 목적 보다는 향후 AI 관련 시장에 대한 경쟁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AI 생태계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공정거래법, 소비자법으로 규율하는 방안 등 검토), AI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 행위를 모니터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AI 경쟁 정책 동향에 주목하고, 이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김홍기
변호사
T 02.3404.0489
E hongki.kim@bkl.co.kr



강태욱
변호사
T 02.3404.0485
E taeuk.kang@bkl.co.kr



윤주호
변호사
T 02.3404.6542
E juho.yoon@bkl.co.kr



강정희
변호사
T 02.3404.6480
E jeonghee.kang@bk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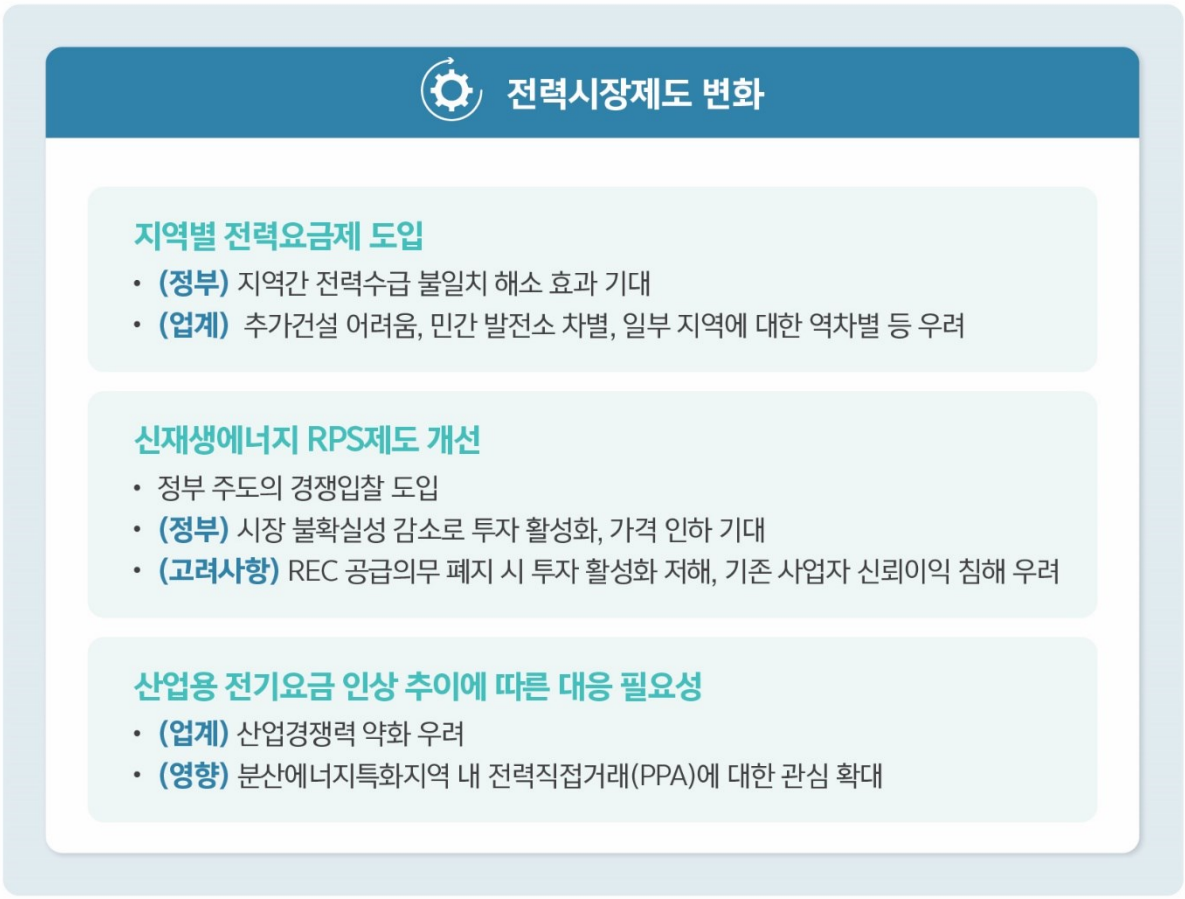
김규식
변호사
T 02.3404.0945
E kyusik.kim@bkl.co.kr

Part 6 | 에너지/환경



I.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시장 동향

1. 전력시장제도 변화



1) 지역별 전력요금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전력요금제 도입 정책 추진의 선행 작업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지역별로 다른 전력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LMP)**를 우선 도입하여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산업부는 2024년 5월 22일 열린 제3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2025년 상반기에 **도매요금 차등**을 시행하여 정확한 지역별 원가를 산출한 후, 이를 근거로 2026년부터 **소매요금 차등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도매가격(SMP)를 다르게 정하는 지역별 한계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LMP를 통해 전력계통 상황에 비해 발전기가 많은 지역은 SMP가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SMP가 높은 지역으로 신규 발전기가 진입하여 지역 간 전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업계에서는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여러 여건이 고려되기 때문에 가격으로 입지 신호를 주더라도 추가 건설이 어렵고, 송전제약 책임을 비수도권 민간 발전소에게 전가함으로써 기설 민간 발전소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며,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이 불합리하고 일부 지자체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으므로, 향후 LMP 제도의 도입 여부와 세부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이에 따른 대응 필요성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10월 24일부터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1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대상인 산업용(갑) 전기요금을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하여 평균 9.7% 인상하였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총 7차례 인상되었고, 2021년 kWh당 평균 105.5원인 것을 고려하면 3년간 약 60% 이상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계, 특히 전기 사용량이 다른 산업보다 많은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산업계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가정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인상할 경우 실질적으로 산업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도 이러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이가 계속될 것인지,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 또는 조정의 시기 및 추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체 수요자를 중심으로 자가발전이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력직접거래(PPA)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PPA를 통한 전력구매 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바,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3) 신재생에너지 RPS제도 개선

산업부는 2024년 5월 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며 정부주도로 재생에너지를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공급의무자(500MW 이상 대규모 발전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현행 RPS제도를 변경하여, 정부가 매년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계획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입찰물량을 직접 공고하고, 가격·비가격 지표로 입찰자를 평가하여 낙찰된 사업자와 응찰한 가격으로 장기(20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행 RPS제도 하에서 공급의무자와 장기고정계약을 체결한 발전설비는 현재 계약이 유지될 것이나, REC 현물시장 설비는 장기계약으로 전환되도록 유도될 예정입니다.

현행 RPS제도는 복잡한 공급인증서(이하 'REC') 가중치 체계, 현물시장 REC 가격의 불확실성, REC 공급자이자 수요자인 공급의무자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성 등 여러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바, 정부는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의 도입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감소되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쟁 요소의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가격 인하가 유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의무자의 REC 공급의무가 폐지될 경우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REC 판매를 수익기반으로 하는 기존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신뢰이익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초 2024년 하반기 중 이와 같은 RPS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는 바, 그 시기와 세부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원자력발전산업 성장기반 구축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종전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수출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펼칠 것을 예고하였고, 실제로 금년에 체코원전 수출계약 체결 등 성과를 냈습니다. 2025년도에도 높은 수준의 원전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등 이같은 정부 정책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의 정치 상황 등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전 정책의 추진 드라이브와 아래에서 살펴보는 각종 정책 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체코원전 수출계약 체결 및 원전 수출 노력 지속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하여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2024년 7월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만의 성과로, 해당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로(예상 사업비 약 36조원 수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5년 3월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체코 원전수주를 계기로 하여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습니다. 신규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수출 유망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주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원전 수주는 물론 원전설비 수출에도 총력을 다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2) 원전산업지원법 제정 추진

정부는 2024년 7월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고,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대표 발의로 2024년 9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상임위 심의 중입니다.

해당법안은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CFE(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정부의 정권과 무관한 5년 단위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통령 소속의 원자력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무탄소 이행 및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산업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전력구매계약 등 실적 인증제도의 수립 및 시행, ▲반도체 등 사업자가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 행정적·재정적·세제적 특례 등 제공,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 설치, ▲원자력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필요한 재정지원, ▲중소형원자로(SMR) 개발, 실증 및 보급화와 연구개발 등 국내 원자력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지원, ▲원자력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원자력산업 고급인력 양성 및 확보 및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정부의 원자력산업에 대한 지원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유관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SMR 사업화 등 차세대 원자력 개발 추진

정부의 지원 및 산업 육성 노력은 기존 원전뿐만 아니라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원전에 비해 크기를 5분의 1 수준으로 줄인 SMR은 미국의 핵심산업인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차세대 원전으로, 우리 정부도 관련 기술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6월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2030년대에 차세대 원자력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25년까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대 상용화를 추진하며, ▲2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도입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2025년 정부의 원전 관련 예산 중 329억원 상당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에 편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2025년도에 SMR관련 산업의 육성을 장려하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3. 가스시장제도 개선 노력



1) 배관망 이용제도 개선

민간LNG 직수입이 확대되며,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에 대한 시설이용자들의 가스인입 요청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향이 증대함에 따라, 천연가스 인프라의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가스시장의 주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2024년 1월부터 시설이용자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및 인입가이드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배관시설심의

위원회는 산업부 소속 1인, 시설이용자, 가스공사, 산업부 각각 2인 추천에 따른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인입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 적정 인입가능량, 기타 가스배관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심의위원 과반 이상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인입가이드제는 시설이용자들의 원활한 가스인입을 위해 공사가 계통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자들의 가스인입 계획을 수립,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민간LNG 직수입자들은 구조적으로 유일한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배관망을 운영 및 관리하는 구조와 공사가 배관망에 대한 인프라와 정보를 독점한 구조로 인하여 배관시설 이용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망 중립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또는 조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한국형 LNG 용량시장 시범입찰 실시

산업부는 2024년 10월 31일 **한국형 LNG 용량시장 시범입찰**이 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LNG 용량시장은 정부가 입찰에 부친 발전용량을 발전사업자가 경쟁을 통해 확보하는 제도로서, 신규 LNG 열병합발전 진입 과정에 용량시장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연도별 진입용량을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사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1.1GW에 대한 입찰공고가 이뤄지고, 2025년에는 1.4GW가 입찰시장에 나올 전망입니다.

금번 입찰은 입찰에 참여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에 대해 적격성, 가격, 비가격평가를 진행하는데, 적격성은 사업자의 재무요건, 중앙급전 발전기 요건 등 기본요건을 검토하게 되며,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사업자들 중 가격(50점)·비가격(50점) 부문 평가를 합산하여 1.1GW 용량 범위 내에서 사업허가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가격평가는 **최저가방식**으로 평가되어 사실상 입찰가격(CP)을 어떻게 써내느냐가 사업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II.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동향

기후위기는 2025년에도 중요한 글로벌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11월 11일부터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2025년 이후 기후 재원의 확대와 파리기후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세부 이행 규칙 마련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파리협정 재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2025년에는 주요국의 탈탄소 경제 전환 속도가 다소 주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5년에도 주요국의 탄소가격제 도입 추세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글로벌 녹색 무역장벽화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주요국 탄소가격제 도입

세계은행(World Bank)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전 세계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 75개의 탄소가격제를 적용 중이며, 이는 글로벌 탄소배출량의 약 24%를 차지합니다. 탄소가격제는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비용을 부과하여 이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는 정책 도구로 탄소세(Carbon Tax)나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5년에도 글로벌 탄소가격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U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현재 진행 중인 전환기간을 거쳐 2026. 1. 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 CBAM 전환기간 현재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산업에 속하는 주요 제품들이 규제 대상이며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은 EU에 수출하는 대상 제품의 온실가스 내재배출량을 산정하여 매 분기별로 보고해야 함 - 2026. 1. 1.부터 수출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때 CBAM인증서의 가격은 EU배출권거래제(EU-ETS)에 따른 현지 탄소배출권 가격에 연동 - 2025년에 EU는 CBAM의 2026년 의무 시행을 앞두고 CBAM등록부, 수입자 승인, 제3국 현지 탄소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이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들을 순차적으로 제정하고 CBAM 대상 품목의 추가 확대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 한편,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최종안이 EU 의회를 통과하여 2024.7.25. 발효 - 이에 따라 순매출액 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EU 수출 기업과 공급망에 속한 상당수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EU CSDDD는 기업의 공급망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인권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에 실사와 정보공개 책임을 의무화한 지침으로 EU 회원국은 EU CSDDD 발효 후 2년 이내에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함. 이에 따라 CDSSS는 기업 규모 별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임 - 회원국은 CSDDD 위반 기업에 대해 글로벌 순매출액 기준으로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한도로 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미국 	• 미국은 연방 차원의 자국 내 탄소배출에 대한 탄소가격제는 도입하지 않은 가운데, 수입품의 제 3 국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다수의 법안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그 중 2023 년 말 미국 하원에서 재발의한 청정경쟁법안 (Clean Competition Act, CCA)은 에너지 집약적인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발의하였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 법률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CCA 발의안에 따르면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제지, 석유화학 등 총 12개 산업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며 점차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대상 확대할 예정

	- 탄소세는 미국의 제품별 평균 탄소집약도를 기준으로 초과 배출량에 대해 톤당 USD55을 부과하며, 매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5%씩 추가 인상하여 2030년에는 약 USD90 수준으로 인상 • 또한, 지난 2023.7.9.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프루브 잇 (Providing Reliable, Objective, Verifiable Emissions Intensity and Transparency Act, PROVE IT) 법안도 현재 입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프루브 잇은 미국이 자국을 포함한 해외 주요국에서 생산되는 특정 제품의 탄소 배출 수준을 파악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미국이 자국의 저탄소 배출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풀이됨 • 마지막으로 2023. 11. 2.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에서 발의한 외국오염수수료법안 (Foreign Pollution Fee Act, FPF)은 미국이 수입하는 주요 제품의 탄소배출량 수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청정경쟁법안(CCA) 내용과 유사 - FPF법안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하는 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철, 제지 등의 제품이 규제 대상이며, 미국에서 생산된 동종 제품보다 10%이상 탄소배출량이 많으면 그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됨
영국 	• 2027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할 예정이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이 규제 대상 - 영국 CBAM은 자국 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탄소누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영국 배출권거래제(UK-ETS)와 연계하여 시행
중국 	• 2021 년부터 발전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국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순차적으로 산업부문까지 확대
튀르키에 	• EU 와의 연계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2024 년 하반기 할당계획 수립 후 2025 년부터 시행할 예정
그 외 국가	•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등 다수 국가들도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탄소가격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2025년에도 글로벌 탄소규제는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가격제의 확대는 새로운 형태의 녹색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욱이 수출기업은 수입국의 탄소가격제에 따른 탄소배출 기준이나 감축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국가의 시장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U CBAM의 경우 2025

년 말 전환기간이 종료되므로 대상 기업들은 본격적인 의무 이행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EU 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 추진 중인 다수의 탄소가격제의 진행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제3국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규제는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이고 무역 왜곡적 요소가 적용되어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탄소가격제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해당국의 지속적인 정책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II.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일정 한도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만 배출활동을 허용하는 시장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을 제정하여 2015년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1기, 2015-2017)을 시작으로 현재 제3차 계획기간(3기, 2021-2025)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국내 847개의 할당 대상업체들이 배출권거래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제4차 계획기간(4기, 2026-2030) 운영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배출허용 총량을 담은 할당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5년에는 탄소시장 참여자 확대 및 탄소배출권 선물 등 파생상품 도입이 추진되는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식과 탄소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제 4 차 계획기간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배출권거래법 제4조는 정부가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4기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2024년 11월 27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12월말 안에 해당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기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3기)	변경내용 (4기)
배출허용 총량 설정	· 비전환 내 부문별 배출허용총량 설정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 시장안정화조치 및 시장조성 예비분 34 백만톤은 배출허용총량 외 설정	· 비전환 내 부문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 · 기존 총량 외 예비분 일부 또는 전부를 총량 내에서 설정
유상할당 판단 기준 및 업종 분류기준 변경	· 무역집약도 X 비용발생도 · 법인 기준 분류	· 무역집약도 x 탄소집약도 · 사업장 기준 분류 · 유상할당 비율 확대
BM할당 방식 확대	· 12개 업종 제품BM 적용 · 제지·목재 연료BM 적용 · 평균배출효율 기준 BM계수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제품BM 추가 확대 · 연료BM 전부문 확대 · BM계수 기준 상향
탄소시장 활성화 및 시장 안정화	· 유상할당 업체만 경매참여 · 배출권 직접매매 · 가격 변동성에 따른 시장안정화	· 모든 할당업체+시장조성자 경매참여 · 위탁거래, 선물거래 · 한국형 K-MSR 도입
전력 간접배출 제외 검토 (5기)	· 전력간접배출 포함	· (5기) 전력가격 내 적정 탄소비용 반영 등과 연계하여 전력간접배출 제외 검토
지표배출권 폐지, 계획기간 간 이월제한 완전 폐지 (5기)	· 이행연도 별 지표배출권 · 순매도량 3배까지 이월 (*5배까지 확대 예정)	· (5기) 배출권지표제 폐지 검토 · (5기) 이월제한 완전 폐기 검토

2. 할당대상 기업의 대응 방안

2025년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4기 운영 방향이 확정되고 기업별 배출권 할당방식과 할당량이 결정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대응하는 840여개 할당대상 업체들은 해당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차질없이 4기 이행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4기 기본계획과 2025년 6월 수립 예정인 할당계획에서 기업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전문가



김정관
고문
T 02.3404.7513
E junggwan.kim@bkl.co.kr



권소담
변호사
T 02.3404.7651
E sodam.kweon@bkl.co.kr



김진효
외국변호사(미국 Oregon주)
T 02.3404.0282
E jinhyo.kim@bkl.co.kr

Part 7 | 제약바이오



I.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제약·바이오산업 전망

1. 트럼프 1기 제약·바이오 정책

제약업계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트럼프 1기(2017~2021) 행정부처럼 2기 행정부도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제약산업의 붐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 환호하였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신약과 의료기기의 FDA 승인 절차를 간소화(Fast Track, 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하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FDA 최종 승인을 받지 않은 실험적 치료법에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Right to Try)를 제공하는 등 규제 완화에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제약산업은 급성장하였습니다.

2. 트럼프 2기 정책 전망



1) 정책 전망① - 백신 회의론자의 보건수장 임명과 공중보건 리스크

하지만, 백신 회의론자로 널리 알려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가 보건복지부(HHS) 장관으로 지명되고, 포괄적 백신 접종을 반대해 온 데이브 웰던(Dave Weldon) 전 하원의원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수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했던 존스홉킨스병원 종양외과 의사 마틴 매캐리(Martin Makary)가 식품의약국(FDA) 수장으로 각각 임명되면서, 현지 전문가들은 규제 환경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공중보건 정책의 원칙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FDA와 CDC가 한동안 대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네디의 HHS 장관 지명이 상원에서 인준될 경우 백신 생태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20여 년간 백신 반대 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소아 예방접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 지원이 약화되고, 백신 승인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신 불신 여론이 확산되면 접종률이 하락하고, 백신

제조업체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케네디는 백신 연구를 감독하는 국립보건원(NIH)의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을 언급한 바 있어, FDA의 신약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약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전체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 정책 전망② - 바이든 정책의 지속 가능성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꼽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 약물 책정 조항**에 대해 트럼프 2기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메디케어 약가 협상을 통해 처방약 가격을 낮추는 IRA의 핵심 조항에 대해 일부 공화당 의원은 폐지 의지를 표명했으나, 약제비 절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2기 행정부는 법안 자체를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실행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우선 순위를 조율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생물보안법(US BIOSECURE Act)**은 2024년 9월 양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생명공학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 선도 바이오 기업과 미국내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견제 방향과도 일치해 확대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NBBI)**는 바이오산업 연구 및 제조 강화, 혁신 촉진, 공급망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제조업 중심 정책과 일치하여 역시 지속될 전망입니다.

3) 정책 전망③ - 바이오 인수합병(M&A) 촉진 예상

빅테크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2025년 1월 퇴임함에 따라 제약 산업의 M&A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나 칸이 이끄는 FTC는 M&A 규제에 대한 엄격한 지침을 발표하고, 2023년 미국 바이오 기술 기업 Maze Therapeutics와 프랑스 Sanofi 간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약사의 M&A 거래를 위축시켜 왔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FTC 리더십의 변화가 대형 제약사의 M&A 거래를 장려하고, 소규모 바이오 기술 기업들이 엑시트(Exit) 전략을 실행하기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미국 내 제조 시설을 인수하려는 외국 바이오 기업의 M&A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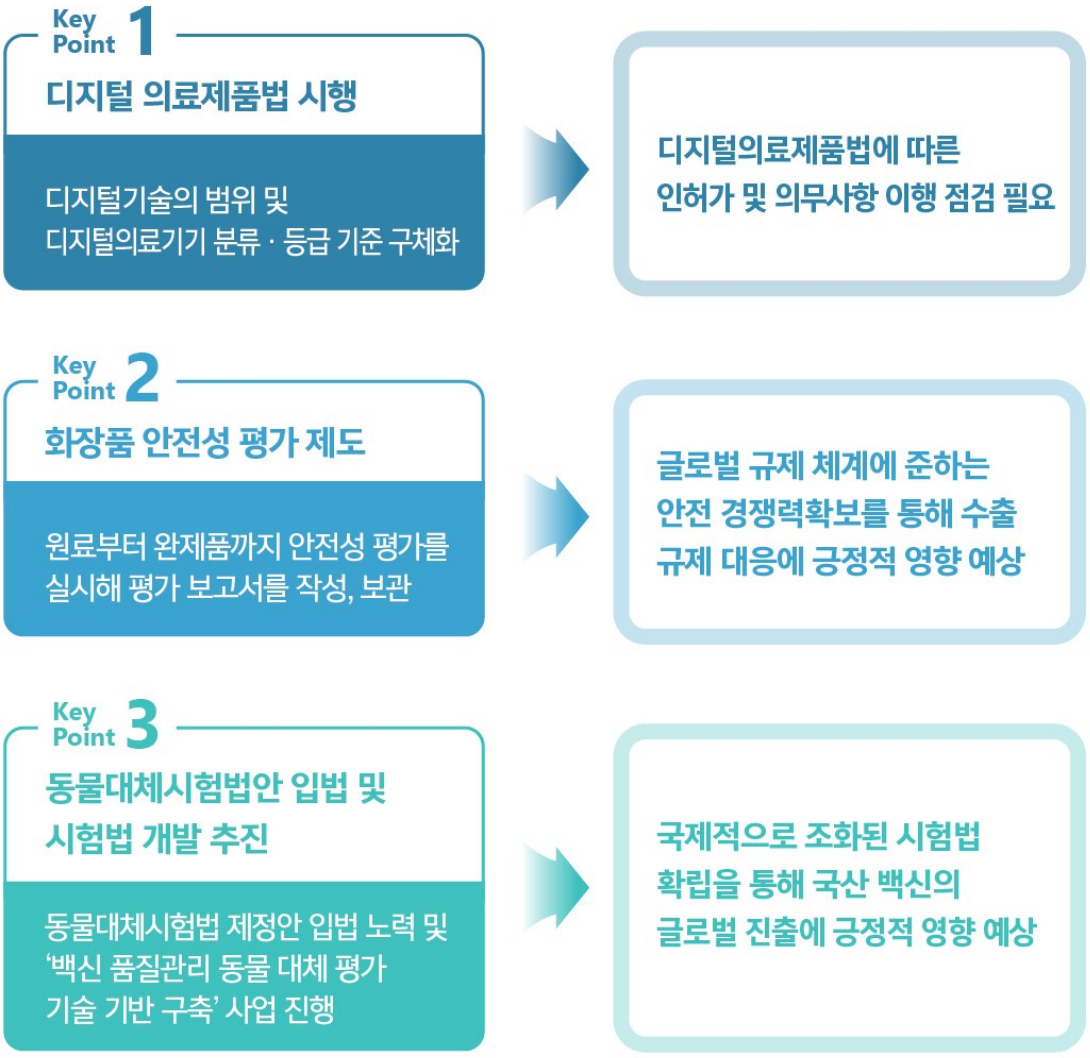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지출 절감을 위해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캠페인 기간 중 공언한 만큼, 한국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시아권 경쟁 기업들과의 치열한 가격 경쟁이 예상되므로, 차별화된 시장 공략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FDA 허가 또는 승인을 준비 중인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들은 강화될 FDA 등 규제기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생물보안법 제정 이후 중국 바이오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상당 기간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공백을 국내 제약사들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네트워킹과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DMO(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인 한국 CDMO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감면, 보조금 및 파트너십 혜택 조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NBBI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미국 정부의 보조금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탐색해야 합니다.

한편, 일본과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하며,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장단기 전략도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원료의약품(API)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 및 동남아시아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제약사들은 미국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만의 장점을 내세운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II. 2025 년 국내 규제 전망



1. 디지털 의료제품법 시행 – 디지털의료기기 판단기준 구체화

1)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의 2025. 1. 24. 시행을 앞두고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치고 있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를 '디지털의료기기'로 보아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법 제2조 제1호 제2호), '디지털의료기기'는 인허가 심사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임상시험 계획승인 및 관리기준,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 우수 관리체계 인증기준 등 디지털의료기기 특유의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기존에 「의료기기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던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중 어떤 제품들이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디지털의료기기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공개되었는데, 「디지털의료제품의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입법예고 (2024. 12. 16.자 식약처 공고 제2024–565호)를 통해서입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 경우는 디지털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이 명확해 보이고,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i) 사용하는 기술이 지능형로봇법, 초고성능컴퓨터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의한 바에 부합하는지 여부, (ii)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장치·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지(기기 자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또는 액서세리) 또는 네트워킹(전자 인터페이스, 인프라)이나 부수적인 목적을 갖는지(구성품) 여부를 실질적으로 살펴보아야 디지털의료기기로 분류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입법예고된 고시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품목코드 E) 및 체외진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품목코드 P)는 기존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분류체계에서 삭제되고, 디지털 의료기기 분류체계로 이전됩니다(기존 허가는 자동으로 전환).

2) 시사점

기존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품목코드 E) 및 체외진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품목코드 P) 품목허가를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기존 품목허가가 디지털의료제품법상 품목허가로 자동 전환되므로 2025. 1. 24. 이후 디지털의료제품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품목허가에 따른 기재사항이 적혀 있는 용기, 포장, 첨부문서 등은 유예기간인 2027. 1. 23. 경과 전에 변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의료기기로서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략적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상 규제(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임상시험 계획승인 및 관리기준 등)를 적용받을 것인지 미리 검토하여 식약처에 디지털의료기기 해당 여부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예정

1) 주요 내용

식약처는 2025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국내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화장품법 개정 등 근거 법령을 정비와 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 등 제도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 평가 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중국, 유럽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당초 2026년으로 예정된 도입 시기를 2년 유예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간 생산 수입 실적 10억원 이상 업체와 신규 품목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31년부터는 전 업체와 품목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전성 평가 자료의 최소 요건으로는 안전성 정보, 안정성 평가 결과, 안전성 평가자의 서명과 자격증이 필요하며 세부 요건은 국내 제품과 업계 특성을 반영해 고시나 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평가자는 (i) 관련 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중 업무 경력이 있는 자, (ii) 관련 전공 학사학위 취득 후 비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iii) 특성화대학원 등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 (iv)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로서 관련 업무 경력이 있고 비학위과정을 이수한 자 등 자격요건을 다양하게 설정할 방침입니다.[2]

2) 시사점

세계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글로벌 규제 체계에 준하는 안전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 규제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장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안전성 평가 자료 준비를 위한 내부 인프라 구축하고 기술 가이드라인 등 식약처의 정책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동물대체시험법안 입법 및 시험법 개발 추진

1) 주요 내용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는데도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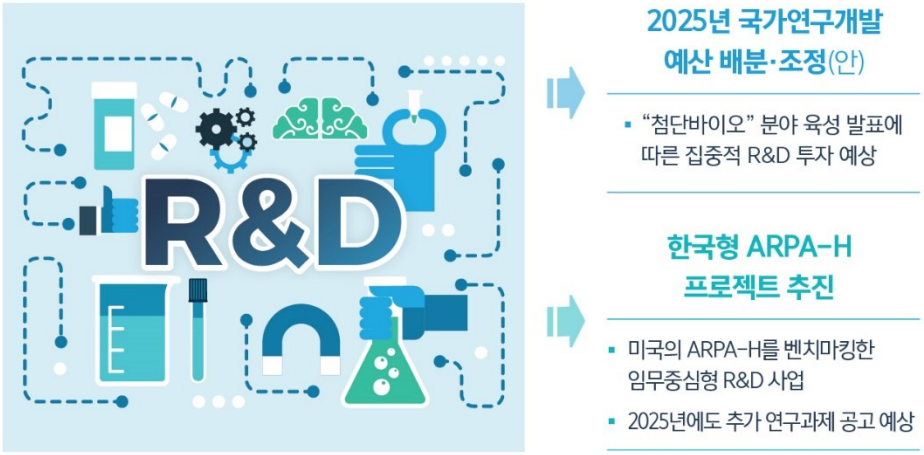
[2] 헬스경향, 2024. 11. 6.,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7월 25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3]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식약처는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이 법률 취지에 맞게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16억 4,000만원을 투입해 '백신 품질관리 동물 대체 평가기술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보툴리눔,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의 출하 승인에 필요한 품질관리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 개발이 목표입니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생체 내 보툴리눔 독소 기전을 시험관에서 구현한 시험법, 무독화 시험법, 역가 시험법 등 이와 관련된 검증을 2026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2027년부터는 유럽 등 외국 기관과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 백신 관련 기술문서에 반영하는 등 동물대체시험법 규제를 선도할 예정입니다. 2028년엔 시험법에 사용되는 반응 시약(항체 등) 자체 생산 및 공급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 자립 환경을 조성 후 2029년에는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에 기존 동물실험법을 삭제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을 반영할 계획입니다[4].

2) 시사점

특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용의 중요성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행정기관 설립, 대형 연구 프로젝트 추진,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과 기술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전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법안으로 이해됩니다. 백신 품질관리 동물대체시험법의 검증 과정을 거쳐 국제적으로 조화된 시험법을 확립하고 보급될 경우, 국산 백신의 글로벌 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남인순 의원 등 15일 발의안

[4] 헬스코리아뉴스, 2024. 11. 18., '정부, 내년부터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 개발 추진'

III. 2025 년 국내 산업지원 정책 동향

1. 보건의료 R&D 정책 – 첨단바이오 분야 집중 투자

1)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정부는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통해 2025년도 주요 R&D 예산 약 24.8조 원 중에서 3.4조 원을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개발에 투자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첨단바이오' 분야를 초거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맞춤의료를 위한 국가전략자산인 한국인 바이오 빅데이터(100만 명 이상)를 확보하여 국가 바이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DNA·RNA 디자인, 바이오 부품 합성 등 요소기술 확보, 글로벌 협력 강화, 핵심인력 양성 등을 위해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합성생물학 핵심기술에 AI 기술을 접목한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난치암 조기진단, 유전체 편집·제어 기술 등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크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도전적 기술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우수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오가노이드 활용 유전자·세포치료제 유효성 검증·제품화 등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하면서 유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첨단바이오 중점 분야 간 연계 체계 및 투자전략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2) 시사점

2025년에는 첨단바이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R&D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같은 기조는 장기적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도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치료 대상자 및 위험도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 국가 바이오 디지털 플랫폼 구축,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확보,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난치암 조기진단, 유전체 편집·제어 기술, 오가노이드, 유전자·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해당 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정책 기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

1) 주요 내용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미국의 보건의료 분야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체계인 ARPA-H를 벤치마킹한 임무중심형 R&D 사업으로서,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R&D 사업입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종전의 R&D 사업과는 달리 도전적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PM을 중심으로 연구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즉, R&D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실패를 용인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간의 지원 사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총 1조 1,628억원의 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혁신을 5대 임무로 선정하여 2차례에 걸쳐 아래의 연구과제에 관한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5].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공고 연구과제>

임무	연구과제
보건안보	• 백신 초장기 비축기술 • 백신 탈집중화 생산시스템 구축
미정복질환 극복	• 20-30 대를 위한 10 종 암 조기 스크리닝 기술 개발

[5] 보건복지부, 2024. 10. 18. 공고

	• 난제 극복 RACE: Cold Tumor 에 대한 신규 약물 타겟 초고속 검증 및 신속 개발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 의료난제 극복 우주의학 혁신의료기술개발 • 첨단 미세생리시스템 기반 면역기능 모사 혁신 기술개발
복지·돌봄 개선	• (노쇠 고령자의 기본생활 보장 및 돌봄 의료 품질 향상을 위한) 통합 디지털 돌봄(Care-On) 솔루션 개발
필수의료 혁신	• 멀티모달 AI 기반 지역완결형 스마트 응급환자 분류·최적 이송 시스템 개발 • AI 기반의 다기관 중환자 실시간 관리 플랫폼 및 이송 시스템

한국형 ARPA-H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전문 지원 조직으로 마련하되, 추진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으로, PM(Project Manager)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만 추진단장-PM간, PM-PM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로 프로젝트 성과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자문그룹, 난제발굴지원단, 임무별 전문가 자문단 등 다양한 전문가와 수요자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RPA-H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보건의료에 대한 도전적 문제를 발굴, 확정, 프로젝트 기획 및 접수, 과제 선정 평가, 과제 관리, 과제 결과, 성과 관리 및 환류, 글로벌 협력 등의 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6]

2) 시사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첨단바이오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필수의료 혁신 등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어 2025년에도 추가 연구과제가 공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막대한 R&D 투자 비용이 수반되는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회사들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대규모 R&D 투자를 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단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보건복지부, 2024. 7. 26. 보도자료

관련 전문가



송영주
고문
T 02.3404.6595
E youngjoo.song@bkl.co.kr



안효준
변호사
T 02.3404.6409
E hyojun.an@bk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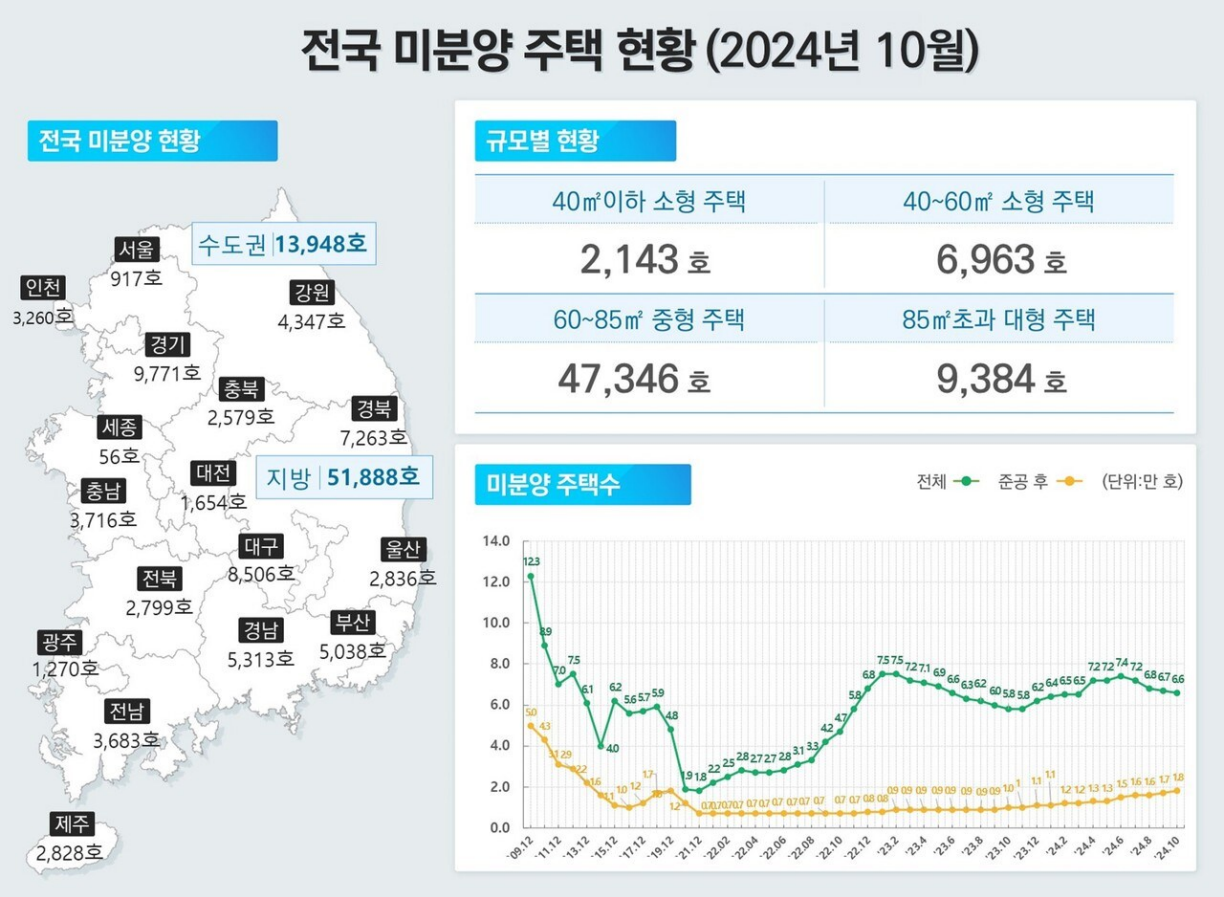


백지욱
변호사
T 02.3404.0958
E jeewook.baek@bkl.co.kr

Part 8 | 건설부동산

I.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해 증가되는 분양계약의 취소 및 해제 관련 소송

1. 배경과 전망



(출처: 국토교통부)

집값이 상승하고 1가구 1주택 관련 규제,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에 대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에 대한 분양과 투자가 유행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주택가격의 상승, 저금리로 인하여 분양 자체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무렵이 되어 분양목적물의 가격이 분양가 이하로 하락하자 수분양자들과 분양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거부하면서 분양자, 시공사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 및 해제를 구하는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과대광고 등에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분양목적물인 부동산 가격이 분양가보다 하락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한 2025년에도 분양

계약 취소 및 해제 관련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는 정부에서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실제로 모든 생활숙박시설이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것인지 의문이고,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더라도 시세가 분양가보다 상승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생활숙박시설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분양계약의 취소 및 해제 관련 소송에서의 쟁점

분양계약의 취소 및 해제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2025년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분양광고 위반 관련

통상적인 계약에서는 광고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규모 부동산 분양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 분양목적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분양광고에 분양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서가 아니라 분양광고에 근거하여 분양목적물을 특정합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외형·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중 분양목적물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분양자가 분양목적물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분양광고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들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쟁점에 관해서는 분양광고의 내용의 해석·분양계약서의 명시적인 내용과 다른 분양광고도 분양계약의 일부로 인정할 것인지 등이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숙박시설, 그리고 분양광고와 상이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하이앤드 오피스텔과 관련된 분쟁에서 많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지의무위반 관련

수분양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분양자는 사전에 수분양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수분양자들은 분양자가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쟁점에 관해서는 문제된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분양자가 고지한 정도가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둥이 설치된 상가, 주변에 비선호시설이 존재하는 건축물과 관련된 분쟁에서 많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하자 및 입주가능시기 관련

분양목적물에 다소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입주가 가능하지 않다거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완성된 분양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설사 (임시)사용승인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는 입주지연 또는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하자의 발생 여부, 하자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과 달리 입주자 사전점검이 없는 비주거형 건축물과 관련된 분쟁에서 많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건축물분양법 위반 관련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는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각 목에서는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형,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분양계약에는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형,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하였다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형,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유도할 것이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건축물분양법위반이 있었는지,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형,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것인지, 건축물분양법에 반하여 해제규정을 분양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비주택 건축물에 관련된 분쟁에서 많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방문판매법 관련

최근 일부 수분양자들이 방문판매법이 분양계약에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방문판매법상의 철회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부동산 분양계약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특히 비주거형 건축물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방문판매법상 철회권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분양에 실패한 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분양한 건축물과 관련된 분쟁에서 많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고금리 상황 지속 여파로 인한 공사비 분쟁의 다각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규모 재정지출이 예정되어 있고, 이로써 시장금리가 기대보다 내려가지 않고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불구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대에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부도, 파산 사태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체 중 비수도권의 한계기업은[7] 이미 전년 대비 2.2%P 늘어 3배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만약 금감원의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정리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이 같은 흐름이 상당히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의 파산은 건설 프로젝트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특히 공정관리의 측면에서 상당한 비효율을 야기하게 됩니다. 즉 하도급업체의 줄파산으로 상당한 공정 지연이 빚어지게 되고, 이러한 공정 지연은 전체 프로젝트의 지연을 야기하여, 하도급업체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원도급업체와 발주자 사이의 분쟁으로 확대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하도급업체 교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공사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이미 공급망 이슈로 재료원가가 크게 상승하여 영업이익률이 제한된 상태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원도급업체에 큰 부담을 지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도에는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의 분쟁이 다각화된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주자는 하도급업체의 파산 등을 원인으로 한 프로젝트 지연을 원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시행이익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원도급업체로서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구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발주자 상대로 증가된 비용 보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도급업체의 비용 보전 시도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다양한 접근이 계속될 것이고, 고금리 상황으로 인한 전반적인 이익률 저하가 근본 원인이므로, 관련한 분쟁이 상당히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된 기업

III. 프로젝트 리츠 등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2024년까지는 2022년 이후 계속된 높은 금리와 PF 대출 부실 문제, 분양 시장 불황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경기가 저조하였으나, 2025년에는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 가능성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부의 제도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산업의 장기적이고 견실한 성장을 부동산시장 회복의 주요 방안으로 채택하여, 2024년 6월 17일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이하 '리츠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을 추진 중입니다.

1. 프로젝트 리츠

현행 부투법 하에서도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은 허용되지만, 리츠의 영업(변경)인가, 주식분산(공모의무), 공시·보고의무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부동산 개발 시 리츠 활용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개발단계의 규제를 완화하는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여, 개발 단계에서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는 이원적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러한 프로젝트 리츠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안, 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심의 중이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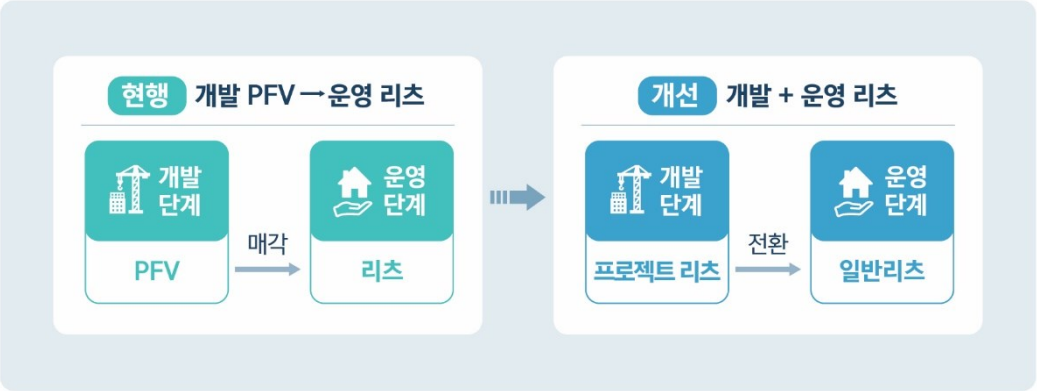
- 개발 단계에서는 인가제 대신 설립신고 제도 적용(운영 단계에서는 인가제로 전환)
 ☞ 부투법상 리츠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한 이후에만 자산의 투자·운용행위, 현물출자, 차입·사채발행 및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발행을 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설립신고 제도를 신설하여 설립신고를 완료한 프로젝트 리츠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 없이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프로젝트 리츠가 부동산 개발사업 완료 후 운영단계로 전환시 영업인가 또는 등록 요
 ☞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운영 단계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영업인가나 등록을 받아 일반 리츠와 같이 운영하도록 합니다.

- 공모 기한을 준공 후 최대 5년으로 연장
 ☞ 부투법상 리츠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일로부터 2년(단 부동산개발사업에 100분의 30 초과 투자하는 리츠는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해야 하나(이른바 '공모의무'), 개정안에 의하면 공모의무 기한을 영업인가일 또는 등록일부터 최대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즉,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개발사업 준공 후 일정 기간 내에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만 공모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입법이 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 위험이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단계에서는 프로젝트 리츠의 공모를 제한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 이 내용이 추후 시행령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점검을 위한 범위 내에서 투자보고서 제출의무로 갈음하여 공시·보고 의무 최소화
 ☞ 부투법상 영업인가 또는 등록한 리츠는 일반적으로 투자보고서 제출 및 각종 보고, 공시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의하면 프로젝트 리츠는 투자보고서 제출의무(이는 리츠의 일반적인 투자보고서와 달리 개발사업 관리·점검을 위한 간소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만을 부담하고 다른 보고 및 공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PFV를 통해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개발된 자산을 리츠로 인수하는 방식이 많았으나, 프로젝트 리츠의 도입에 따라 리츠로 직접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아래와 같이 단일 리츠가 개발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사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개발사업에서 리츠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투법상 리츠에 대해서 영업인가일 또는 등록일 6개월 이후부터 1인당 주식소유 한도(발행주식 총수의 50%)가 적용되는데, 프로젝트 리츠에 대해서는 개발 단계에서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1인당 주식소유 한도는 운영단계에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리츠 활성화 방안에도 프로젝트 리츠의 개발 단계에서는 1인당 주식소유 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투법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30% 이상인 리츠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인허가가 있은 날 6개월 이후부터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적용하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어서, 프로젝트 리츠에 대해서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입법하여 조항 간의 충돌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리츠 투자 다각화

현행법상 리츠는 부투법령에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으나, 2024. 10. 14. 입법 예고된 부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의 자산에서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수요가 높고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자산까지 확대하여, 국토부 승인을 받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특히 헬스케어, 테크자산,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츠 투자 확대 방안 주요 내용>

헬스케어	•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시행령에 의해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자산 포함)으로 구성해야 하는데(부투법 제 25 조 제 1 항), 현재는 시니어주택(「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보증금이 클 경우 위 70% 조건 충족이 곤란하여 헬스케어 자산에 리츠를 활용하기 어려움. 이에 시니어주택의 입소보증금을 위 70% 산정 시 총자산에서 제외
모기지 투자	• 부동산과 관련된 유동화증권,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에 투자한 금액을 '부동산'으로 포함함으로써 부동산 유동화증권(MBS 등) 및 모기지채권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허용

테크자산	• AI, 탄소중립 등 新성장 미래산업 필수 자산인 데이터센터 및 청정에너지 자산(예를 들어 태양광·풍력발전소 등) 등에 대한 투자 허용. 다만,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이들 자산은 '부동산' 간주 자산으로 모두 명확하게 열거되어 있지 않아 그중 일부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국토부 승인이 필요해 보임
산업단지	• 종래 산업단지 내 공장 등 기업 자산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의한 산업용지 처분 제한(5 년), 임대사업 제한 등으로 인하여 자산유동화가 제한되었음. • 리츠활성화 방안과 2024. 7. 10. 시행 산업집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주기업체는 리츠에게 보유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처분하고 이를 다시 임차하는 'Sale and Lease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자금확보가 가능하게 됨
대출 투자 허용	• 리츠의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대출투자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예정 • 부투법은 2019. 8. 20. 개정을 통해 리츠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대출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들이 정비되지 않아서 실무상 대출형 리츠의 인가에 어려움 있음 • 이에 국토부는 부투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리츠가 대출투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3. 리츠 투자 여력 확충

1) 리츠 합병

현행 부투법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리츠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리츠 중 어느 하나의 리츠가 공모리츠인 경우에는 나머지 리츠도 주식의 공모를 완료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공모리츠는 공모리츠와만 합병이 가능합니다. 이에 부투법을 발의하여 공모리츠와 공모 예외리츠(연기금 등이 50% 이상 투자하거나 자산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보유한 사모리츠) 간의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합병 시 부실 방지를 위해 리츠의 자산에 대한 철저한 가치 평가를 하도록 관련 절차·요건을 구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업계에서 공모 상장리츠의 대형화를 위해 사모리츠를 대상으로 한 합병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으나, 이번 리츠 활성화방안에서는 우선 사모리츠 가운데 공모 예외요건을 갖춘 사모리츠에 한하여 공모리츠가 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합병 외에도 리츠의 대형화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리츠의 회사법상 결합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까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자금 유보

현재는 리츠가 원칙적으로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여야 하므로 추가 자산 매입 시 배당금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부투법 개정안 발의를 통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통해 주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신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자금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3) 자산재평가

리츠가 보유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 담보 여력을 확보(추가대출)할 수 있도록 자산재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IV. 노인복지 주택 관련 제도개선

정부는 2024년 7월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이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시니어 레지던스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 부지와 자금 등 공급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니어 레지던스의 공급 확대를 촉진하고, 고령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 상반기 중에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추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토지 및 건물 '사용권'을 통한 실버타운 설립 및 서비스 전문사업자 육성

현행 노인복지법령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인복지법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전문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및 사업자 요건(예: 운영 사업자가 법인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025년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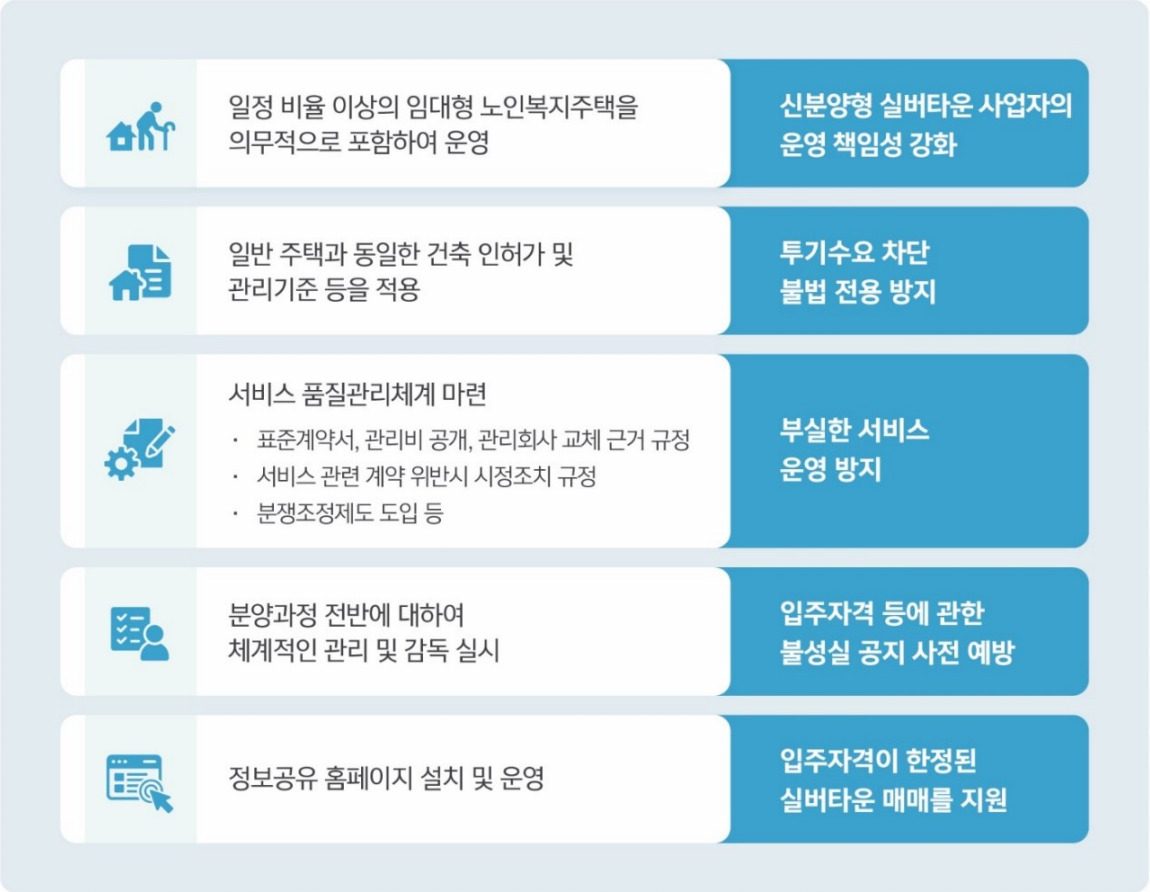
2. 신분양형 실버타운의 도입

과거에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으나, 관련하여 서비스 부실 문제, 미자격자(60세 미만) 거주 문제 등이 발생하자,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오로지 임대하는 방식으로만 공급될 수 있습니다(임대형 노인복지주택).

그러나 노인복지법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자, 노인복지주택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보다 장기간이 소요됨), 결과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이 고령층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다시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신분양형 실버타운), 신분양형 실버타운은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에 집중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과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3. 용적률 완화 및 유휴시설과 국유지 활용 등 시니어 레지던스 부지 확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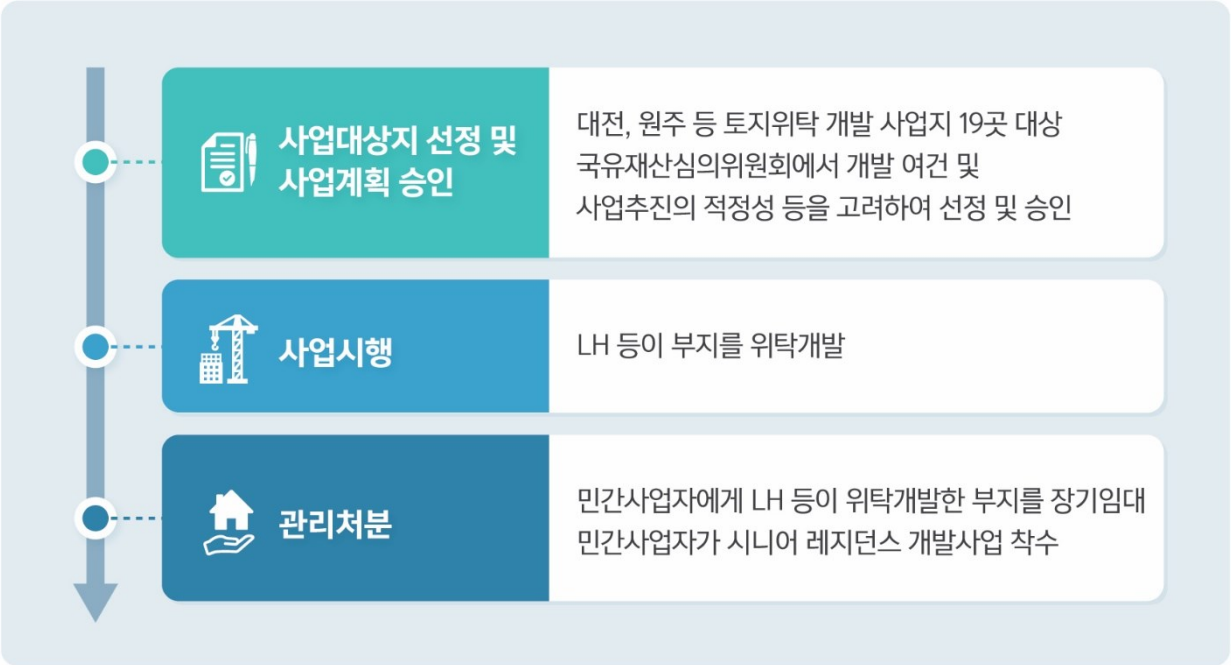
정부는 도심 내 시니어 레지던스 부지 공급을 위하여 아래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① 지자체가 유휴 기반시설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및 밀도 규제 완화 근거 마련: 2024. 8. 7.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 역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기반시설의 복합활용시 용적률 및 건폐율 2 배 완화 및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② 도심 내 유휴시설(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및 용적률 완화를 유도

③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에 활용 가능한 유휴 국공유지(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발굴 및 개발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

위 ③과 관련하여, 정부는 구체적인 예로서 국유재산법 제29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이 위탁개발한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단계로 장기임대 하는 방안을 들고 있는데, 향후 시니어 레지던스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4. 리츠 진입을 위한 규제 완화 및 투자위험 부담 완화

1) 리츠 진입 활성화를 위한 택지 지원 및 규제 개선 추진

정부는 리츠가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① **'프로젝트 리츠'의 도입**: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 1인 주식 소유한도 요건 등 진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고 이러한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I. 프로젝트 리츠 등 리츠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택지 지원:**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츠가 화성동탄2지구 및 2025년까지 신도시 택지 3곳 이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③ **위탁운영사 기준으로 인력 요건 갈음**: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시설의 장 1명과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1명을 노인복지주택에 배치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주택의 종사자는 모두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일 것이 요구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제6호, 별표3 제3호 라목). 그런데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리츠는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어, 위와 같은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스스로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위탁관리리츠가

위탁운영사를 통해 위 인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④ **노인복지주택 위탁 운영사 요건 개선:**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상근 임직원이 없는 위탁관리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리츠로부터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을 위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이는 리츠가 노인복지주택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주요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위 위탁운영사 요건(즉,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⑤ **설치 요건 개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면 리츠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자산보관기관에 해당 부동산을 신탁해야 하므로(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요건(설치자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를 개정하여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고, 리츠의 자산보관의무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의 주체로 리츠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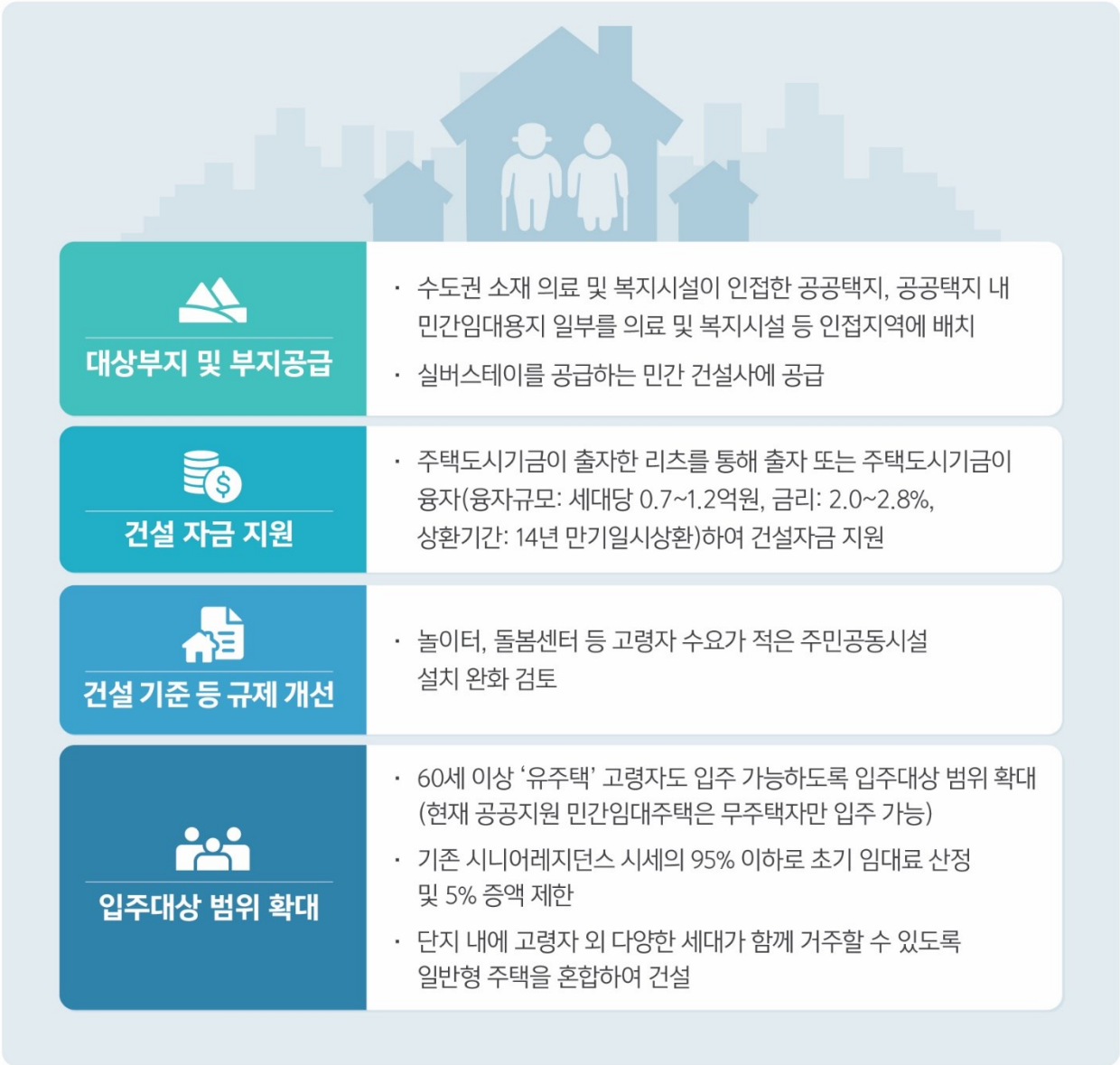
2) 투자위험 부담 완화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시기 등 금융지원 요건이 구체화된 상태는 아니나, 정부가 고려하는 금융지원의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지원 검토
-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 지원 검토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형 실버타운에 한해 예외적으로 투자 허용(단, 단순한 분양형 사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5. 실버 스테이 도입

정부는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 가능한 실버 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 사업을 추진한 후 그 시행 및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전문가



박철규
변호사
T 02.3404.0657
E choulkyoo.park@bkl.co.kr



백호석
변호사
T 02.3404.0686
E hosuk.baik@bkl.co.kr



최철민
변호사
T 02.3404.7637
E cheolmin.choi@bkl.co.kr



강현
변호사
T 02.3404.0147
E hyeon.kang@bkl.co.kr



송치영
변호사
T 02.3404.6531
E chiyoung.song@bkl.co.kr



전은진
변호사
T 02.3404.0163
E eunjin.jeon@bkl.co.kr

Part 9 | 금융

I. 2024 년 가상자산 시장 동향

2024년은 가상자산 시장의 오랜 냉각기 끝에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미국 대선 결과 親 가상자산 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당선 등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등 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한 해였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역시 글로벌 시장과 함께 호황을 누렸으나, 새로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자율규제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비교적 안정화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II. 2025 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1. 법인 실명계좌 허용에 따른 일반 법인의 시장 진입

2024년 11월 6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위원들은 법인명의 실명계좌 발급에 대하여 ①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도 NFT 발행,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다양한 사업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인 점, ②미국·EU·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된 점, ③국내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점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하면서 **법인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금융위원회 2024. 11. 6.자 보도자료).

이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법인명의 실명계좌를 가상자산사업자, 더 나아가 일반 법인에까지 확대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일반 법인에 대하여도 법인명의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되면 그간 사업에 필요한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환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추진되지 못했던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시도될 것이며, **법인들은 다양한 형태로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 고유자산을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 추가적인 규제 완화 흐름을 주시하면서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유통시키거나,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가상자산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외연을 크게 확장할 것이며 질적으로도 큰 성장과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다면 **주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노드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영향이 기대됩니다.

다만, 법인 중에서도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고유자산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여 크게 손실을 입을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고, 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연결성을 심화시키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이들의 가상자산 투자 또는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경우 법인계좌 발급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상장법인의 경우 허용한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스테이블코인 활용 증가

트럼프 행정부는 親 가상자산 기조를 취하고 있고 SEC의 수장인 게리 겐슬러의 사임 등을 계기로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가상자산 생태계의 기축 통화에 해당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량 및 발행량이 동반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때 스테이블코인은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USD를 1:1로 페깅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의미하며, 그 준비자산 역시 USD로 표시된 안전한 단기자산(예: 미국 국채)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과거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수요였던 일본과 중국이 국가경제 또는 지정학적 이유로 미국 국채 보유액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국채의 또다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USD가 기축통화로서 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사용에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통과**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달러 기반인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사용은 더욱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상용화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우리나라 포함)의 법정통화(이하 '법화')의 강제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법화와 다른 점은 번거로운 외환 송금 및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거래에서 달러 기반 결제가 전세계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법적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많은 국가들이 있으므로 이들 국가들과 상거래를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취득하고 거래에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거래의 편이성을 증대하고 오프라인 결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자칫 원화의 수요를 위축시키고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가상자산사업자를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대상에 포함)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2025년 하반기 시행 목표).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환거래법(안)이 공개된 후 확인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일반 이용자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지급결제에는 특별한 제한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내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하여도 현행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는 올해 출범한 금융위 주재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마찬가지로 단일 법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와 유사한 법적 규제를 가하여야 하는지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자격과 조건**을 정하는 등 원화의 가치를 방어하고 우리의 통화 주권을 상실하지 않는 방안을 심사숙고하여 규제의 형태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ICO(가상자산 발행)을 위한 규제를 마련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글로벌 기준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격이 신용기관, 즉 은행을 포함하게 되므로 금융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 방향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보다는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제를 먼저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3. STO 관련 법안 통과

금융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 윤창현 의원이 발의했던 입법안과 유사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는 김재섭 의원 및 민병덕 의원을 통하여 각각 국회에 발의하였는바, 내년 중에 **위 법안들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샌드박스로 허용된 KRX의 상장시장 및 장외거래 중개업자에 의한 장외 시장에서 토큰 증권을 유통할 수 있게 되면 발행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 증권 발행은 발행비용이 절감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록에 따라 주주가 중개기관의 증권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 등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상품의 다양화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금융기관들은 주식, 펀드 등 크게 차별성 없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수료와 UI 등으로 경쟁해왔으나, 앞으로는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발행자산 pool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경쟁하는 환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회사 전체의 지분 투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한 권리만을 증권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므로, 회사 지분을 희석하지 않는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비유동성 자산들의 미래 현금흐름을 유동화 할 수 있게 되어 상장회사는 물론 스타트업이나 개인도 과거보다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TO가 본격화되면 이는 결국 **RWA(real world assets)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WA의 법적 성격은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STO 법제 하에서 RWA가 발행 및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도 **DeFi 프로토콜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RWA가 발행되면서 글로벌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실물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될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역시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전문가



박종백
변호사
T 02.3404.0135
E jb.park@bkl.co.kr



윤주호
변호사
T 02.3404.6542
E juho.yoon@bkl.co.kr



김효봉
변호사
T 02.3404.0985
E hyobong.kim@bkl.co.kr

Part 10 | 금융소송

I.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현황과 전망

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현황

기업의 회계부정,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과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분쟁은 언제나 자본시장을 둘러싼 다툼의 한 축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주주행동주의 및 소액주주 권리 보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 시행된 후 만 20년을 눈앞에 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이러한 유형의 분쟁에서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을 천명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12건 정도로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i)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법원의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본안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최대 3개의 심급을 거쳐야 하는 등 사실상 '6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는 점, (ii)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는 점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4. 12. 현재 진행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사건	근거규정	진행상황
1	구 STX조선해양 사업보고서 등 관련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70조	본안소송절차 진행 중(1심)
2	오스템임플란트 사업보고서 등 관련	자본시장법 제162조	소송허가절차 진행 중(1심)
3	파두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등 관련	자본시장법 제125조	소송허가절차 진행 중(1심)

2.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주요 쟁점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하려는 사람은 총원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8조와 제9조). 법원은 먼저 소송허가절차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한 다음,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내려지면 본안소송절차로 나아가 본격적으로 청구원인을 심리합니다. 소송허가절차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허가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본안소송절차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구체적 청구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각 심리하게 됩니다.

1) 소송허가절차의 주요 쟁점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허가되기 위하여서는 ①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해당 구성원이 소송과 관련된 증권 발행 총수의 1/10,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다수성), ② 자본시장법 제125조 등에 따른 일정한 유형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쟁점의 공통성), ③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적합성 및 효율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지만, 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쟁점의 공통성'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요건은 모든 구성원의 청구원인 가운데 중요사실이 공통되면 충족되는 것이고, 각 구성원의 청구에 약간의 다른 사실이 존재한다거나 개별 구성원에 대한 항변사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흠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6. 11. 4. 선고 2015마4027 판결).

2) 본안소송절차의 주요 쟁점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내용을 각 구성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8조). 이러한 고지는 통상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지만,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도 구성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규칙 제15조).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구성원은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본안소송 절차에서는 이와 같이 소송허가 결정을 고지하는 데에만 여러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본안에서 문제되는 쟁점은 일반 공동소송에서 문제되는 쟁점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거조사의 방식, 손해배상액 산정, 소송의 종료 및 판결의 고지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그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정판결은 구성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치지만, 구성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여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7조와 제28조; opt-out 방식).

3. 앞으로의 전망

비록 지금까지 사례는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꾸준히 계속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주식투자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일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확대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는 추세이므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에 관한 전체적 논의의 맥락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II. 분쟁의 관점에서 살펴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1단계 입법으로, 주로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적 정의,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관련한 사업자의 보관 등 의무,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감독 및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에 관한 규제는 2단계 입법에 포함될 예정이고, 백서에 관한 구체적 내용 역시 2단계 입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5개 장과 22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길지 않은 법률이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최초의 금융규제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향후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법으로 나아갈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4조는 동법이 가상자산 등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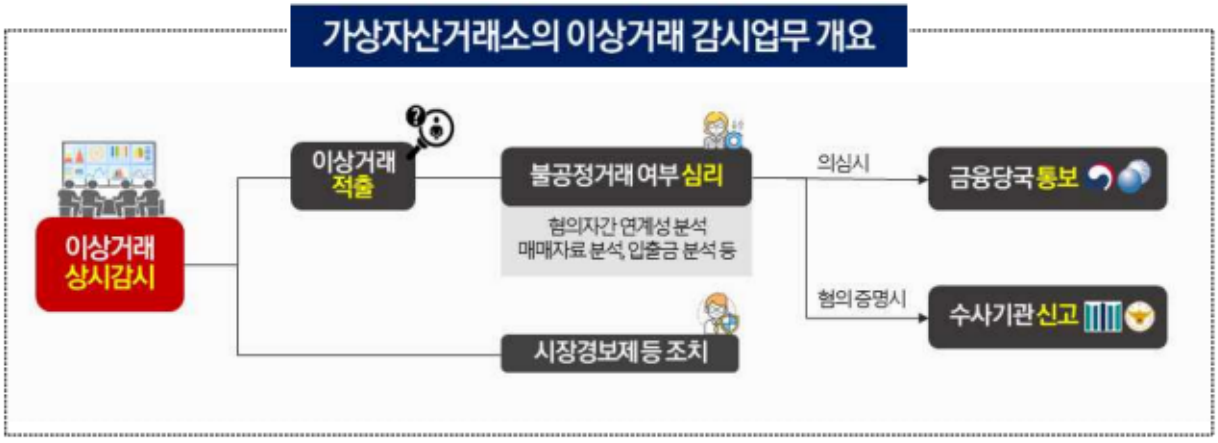
있습니다. 토큰증권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이 우선 적용될 것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의해 정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는 블록체인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별도로 규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거래(제3장) 부분입니다. 1단계 입법사항 중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이기도 합니다.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불공정거래의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융위원회가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와 제17조). 다만,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제10조 제5항),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됩니다(제11조 제1항).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영 제17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보수, 점검하는 등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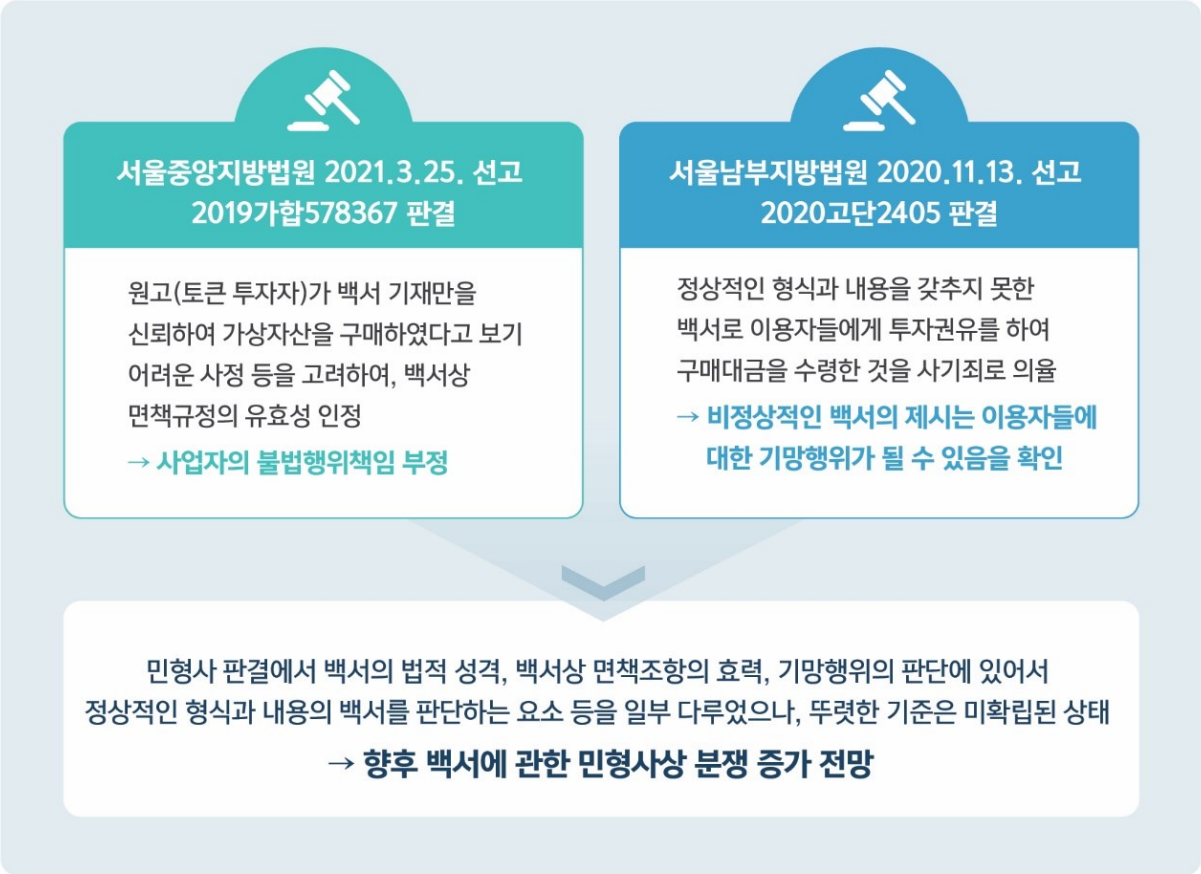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7.5.)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시행('24.7.19.)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전단). 다만, 불공정거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후단).

이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규제인 제10조 제4항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모범으로 한 것으로 향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과 유사한 일반적, 포괄적 규제근거 조항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규정은 백서(White Paper)와 관련지어 다수의 민·형사 분쟁에서 적용 내지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백서'에 관한 민형사상 분쟁의 증가 가능성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백서에 관한 민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합578367 판결에서, 법원은 백서상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책하는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백서상 면책규정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 진 것은 아니었고, 원고가 백서 기재만을 신뢰하여 가상자산을 구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한 기준이 되는 판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합530075 판결은 백서에 기재된 내용을 사업자가 토큰 투자자에게 부담하는 의무 내용을 해석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 역시 백서를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내지 약관 등으로 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형사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2405 판결에서, 법원은 정상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못한 백서로 이용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구매대금을 수령한 것을 사기죄로 의율하였습니다. 즉, 비정상적인 백서의 제시는 이용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도 가상자산의 판매 시 수익인식을 위하여는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점, 백서의 주요 내용을 주석공시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및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심사 시 백서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은 이미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가산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유통량계획,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백서에 기재되어야 할 요소를 개략적으로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더하여 가상자산 투자에 관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10조 제4항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중요사항의 오표시, 허위기재'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가상자산 발행재단 또는 가상자산 투자를 받는 측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중요정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 누락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고, 이용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의 범위는 궁극적으로 발행규제와 공시 규제 마련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많으므로, 향후 백서에 관한 민형사상 분쟁이 증가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



정한별
변호사
T 02.3404.0458
E hanbyul.jung@bk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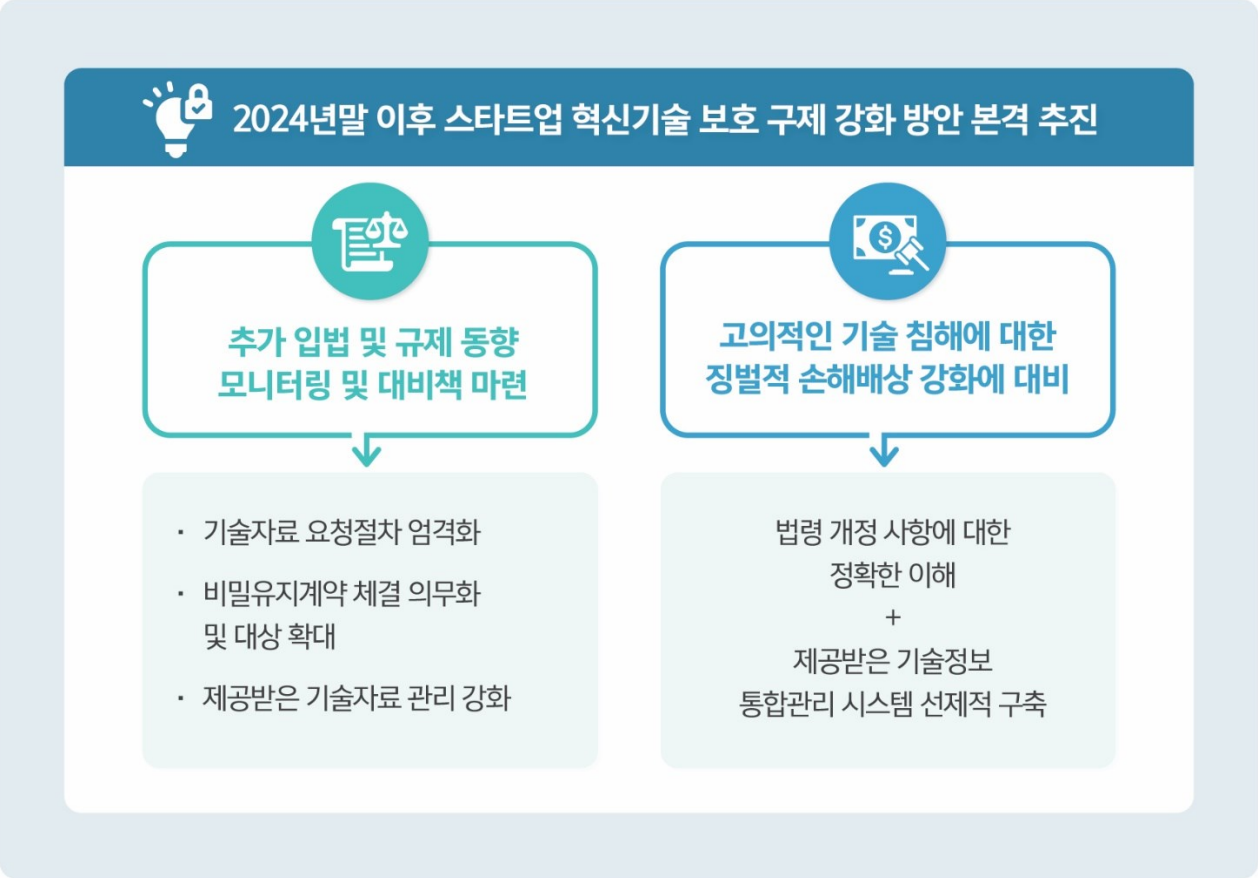


윤정노
변호사
T 02.3404.6592
E jungno.yoon@bkl.co.kr



윤지효
변호사
T 02.3404.7557
E jihyo.yune@bkl.co.kr

Part 11 | IP



I. 스타트업 기술 보호·구제 관련 정책 동향

1.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

2024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방안의 핵심은 Ⅰ. 기술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Ⅱ. 처벌 수준강화, Ⅲ. 맞춤형 지원 강화, Ⅳ. 피해 확산 방지 구축인데, 특히 기업들이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Ⅰ. 기술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Ⅱ. 처벌 수준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요지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술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구분		기존	변경 예정 사항
순번	항목		
1	보호범위확대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 불충족으로 대부분 보호대상 제외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 불충족 시에도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2	법적의무 대상 확대	수·위탁 거래 관계에만 NDA체결, 기술 요구금지 등 법적의무 부과	스타트업과 협상하는 수·위탁 거래의 위탁기업,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모든 양자 관계에 대해 법적의무 부과
3	협상단계 기술요구	거래상 지위를 앞세워 내부 핵심기술 정보를 구두로 무분별하게 요구	요구 목적, 기술의 명칭 및 범위, 비밀유지사항, 대가지급방법, 권리귀속관계 등을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요구
4	협상단계 기술제공	기술제공 사실 증명을 위한 서면발급과 NDA 체결 요구 거부 또는 기피	기술제공 목적 및 범위, 비밀유지의무, 계약위반 시 배상책임 등을 명시하여 NDA체결 의무화
5	협상종료단계 기술반환·폐기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의 기술 정보 반환·폐기 의무가 없어 기술탈취 위험 요소 잔존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NDA에서 정한 방법 및 일자에 따라 반환·폐기
6	침해행위 유형 신설	자기 사용 목적의 침해행위만 처벌	제3자에 대한 부당한 기술제공 및 NDA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기술정보 사용·공개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

처벌 수준강화			
구분		기존	변경 예정 사항
순번	항목		
1	제재조치 강화	수·위탁 또는 하도급 등 일정 거래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제외 시정권고 불이행 시 공표만 가능	시정명령 불이행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벌 부과 가능
2	금전제재 부과	별도의 금전적 제재방안 X	수·위탁 및 대기업의 중대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는 별도로 금전적 제재 부과 방안 검토
3	손해배상액 현실화	제품의 양도·판매에 의한 실손해액만 인정되어 신기술이나 시장진출 전일 경우 적정한 손해 보상 곤란	제품의 양도·판매에 의한 실손해액과 더불어 기술개발 투입비용도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 개선

4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최대 5배 배상책임 인정	협상·교섭 등 계약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5 배 배상책임 인정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고려사항에 비밀유지 위반 여부 반영 검토
5	부처 연계를 통한 통합구제 강화	각 부처별 피해구제 수단이 산재	중기부, 특허청, 경찰청, 검찰청 등 범부처가 연계하여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구축 및 신속한 피해구제 도모

2.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발표

지난 2024월 10월 특허청은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방안 중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대응 분야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예정 사항
순번	항목		
1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영업비밀에 대해서만 존재	사업 관련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가 아이디어 탈취 입증을 위한 주요 증거임에도 이에 대한 입증 제도는 부재하였는데,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과 거래·교섭 시 교환한 자료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 도입 추진
2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강화	없음	부정경쟁행위 시정명령 도입(2024년 8월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 신설 및 당사자 등의 조사자료 열람·복사근거 마련 예정

3. 시사점

상기 변경 예정 사항은 관련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 및 제도의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고, 각 방안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202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기업들은 기존의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에 대한 규제, 부정경쟁방지법의 아이디어 및 성과 모용의 부정경쟁행위 이슈 외에도, 스타트업과 협업 시에 기술자료 요청 절차, NDA(비밀유지계약) 내용, 제공받은 기술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추가 입법 또는 규제의 동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의 협업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청 절차는 한층 더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들은 기술자료 요청 시 명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NDA(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대상이 확대되고 NDA 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기업이 해당 자료를 철저히 보호하고, 무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규제의 동향 변화는 스타트업과 협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스타트업, 중소기업 기술 보호·구제 강화 관련 입법 동향 및 전망

1. 주요 법률의 최근 개정 사항

법령	개정 사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 배에서 5 배로 상향하고, 현행 3 배 한도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대상을 확대함(제 40 조의 2 제 2 항 개정, 2024. 7. 10. 시행) •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함(제 28 조의 11 신설, 2024. 12. 21.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 배에서 5 배로 강화함(제 14 조의 2 제 6 항, 2024. 8. 21. 시행) •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의 최대 3 배로 강화함(제 19 조, 2024. 8. 21. 시행) •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성된 물건 몰수 규정 신설함(제 18 조의 5, 2024. 8. 21. 시행) •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제 도입함(제 9 조 제 1 항 및 제 20 조 제 1 항 제 1 호의 2, 2024. 8. 21. 시행) • 법원이 필요시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청구 소송에서 그와 관련된 행정조사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기록 송부 규정 신설함(제 14 조의 7, 2024. 8. 21. 시행)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행정조사를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 8 조의 5 신설, 2024. 7. 10. 시행)
특허법	• 특허권 침해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 배에서 5 배로 강화함(제 128 조 제 8 항, 2024. 8. 21. 시행)

2. 주요 법률 개정안 최근 발의 사항

법령	발의 사항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법원이 기술 침해의 증명을 위해서도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밀엄수 의무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에 대해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공정위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또는 제공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원사업자가 부인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개정안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시 5 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개정안 발의
특허법	•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 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 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3. 시사점

입법적으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호 및 구제 방안 강화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률 및 법률 개정안 발의 사항을 살펴보면, 고의적인 기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이러한 입법 동향은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과 협업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들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및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제공받은 기술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나 부서, 또는 담당자를 마련하고, 관련 계약 및 법령 체계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기업은 계약 및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적인 법적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 보호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과 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



김지현
변호사
T 02.3404.0180
E jihyun.kim@bkl.co.kr



김정대
변호사
T 02.3404.6407
E jeongdae.kim@bkl.co.kr



윤택
변호사
T 02.3404.7450
E taek.yoon@bkl.co.kr

Part 12 | 조세



I. 필라 1, 2 관련 현황 및 전망

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2 필라 접근법(2 Pillars Approach)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과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글로벌최저한세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이행체계는 2021. 12. 20.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모델규정(GloBE 모델규정)을 공개하였고, 우리나라는 이를 반영하여 2022. 12. 31.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한편, 필라1의 경우 아직 국내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1. 필라 2 (글로벌최저한세제도)

글로벌최저한세제도 중 소득산입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소득산입보완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최초적용연도의 경우는 18개월을 적용하므로, 관련 기업들은 2026년 6월경 최초로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과 결손은 회계상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계산기준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초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OECD에서는 행정지침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처음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저세율국가에서는 자국의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격소재국 추가세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소재국 추가세 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한 결과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이와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세율을 낮게 정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과세권 확보를 위해 적격소재국 추가세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해도, 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결국 소득산입규칙 등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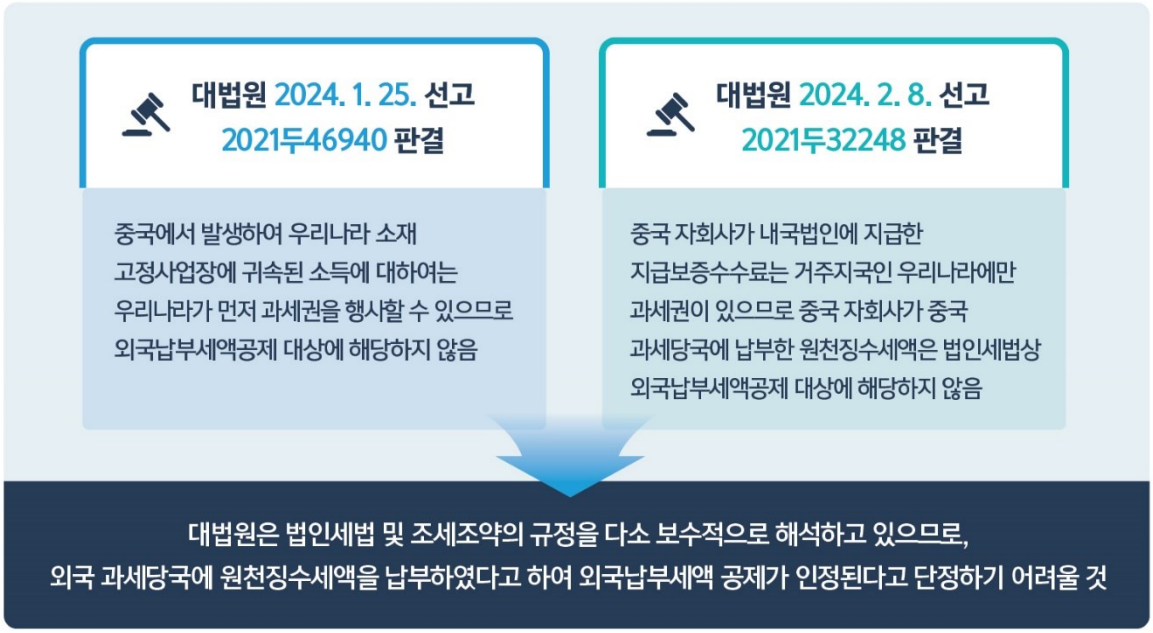
미국이 제공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IRA 보조금 등의 경우, 실효세율 산정 시 분모인 소득에는 가산되나 분자인 대상조세에는 미가산되어 실효세율을 낮추게 되어 기업의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이차전지 등의 사업은 대규모 정부지원과 낮은 제조원가를 통해 중국기업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IRA 보조금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으로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하여 트럼프행정부에서는 IRA 보조금 등에 대해 대대적인 변화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업들은 국내외 정책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불합리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필라 1 (시장소재지국 과세권 배분 및 이전가격세제 간소화)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은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에 재배분하는 'Amount A'와 다국적기업의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하여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Amount B'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이행체계는 Amount B의 시행을 2025. 1. 1. 이후 과세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Amount A 발효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2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각국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도입 이전이라도 Amount B 1단계를 도입한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우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Amount B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국의 도입 현황 및 내용 등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I. 국제조세 판례의 동향 및 전망



1.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 두 46940 판결)

대법원 2021두46940 판결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인 원고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거주자들에게 대여하고 그 이자를 얻었고, 중국 과세당국에는 중국 거주자들이 지급할 이자의 10%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원고의 국내사업장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거주지국인 중국이 중국법인인 원고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여부(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 두 32248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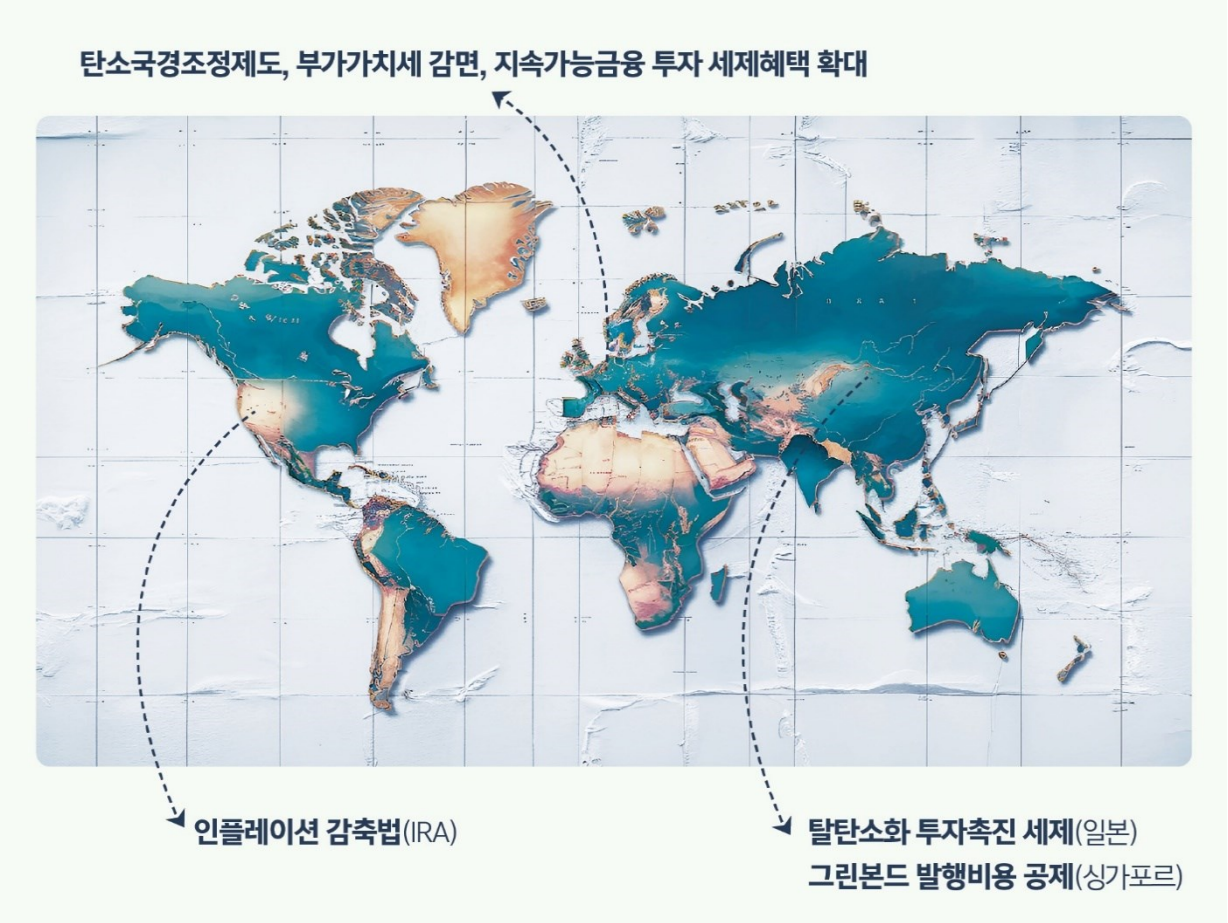
대법원 2021두32248 판결의 경우는, 내국법인인 원고는 중국 자회사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지급보증 수수료를 수취하여 왔고, 중국 자회사는 위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국 과세당국에 위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중국의 자회사가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상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이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데, 지급보증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중국 자회사가 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 자회사가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례의 동향

이와 같이 대법원은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의 규정을 다소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판례의 동향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에 소득을 지급하면서 외국 과세당국에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외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III. 주요 국제조세 이슈 및 전망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ESG(Environment, Social & Governance)가 핵심 평가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OECD와 UN은 회원국들에게 ESG 연계 조세정책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는 'Tax and Environment' 보고서를 통해 환경 관련 조세정책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EU는 2023년 5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입법안을 최종 승인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고,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속가능금융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친환경 투자 세액공제, 청정에너지 생산 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및 ESG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도입하는 등 ESG 조세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의 탈탄소화 투자촉진 세제와 싱가포르의 그린본드 발행비용 공제 등 ESG 조세정책이 증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경저감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 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ESG 조세정책을 두고 있으며 K-Taxonomy(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수립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ESG 평가가 주요 판단기준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향후 ESG 연계 조세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정교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K-Taxonomy를 중심으로 하는 녹색 분류체계가 구체화되면서, 이와 연계된 조세지원도 체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이와 같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세제혜택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ESG 조세정책이 새로운 통상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기업들은 국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전략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전문가



장성두
변호사
T 02.3404.6585
E sungdoo.jang@bkl.co.kr



이은홍
공인회계사
T 02.3404.0575
E eunhong.lee@bkl.co.kr



박창수
변호사
T 02.3404.7659
E changsoo.park@bkl.co.kr